

한반도 인권 회의

유엔 총회

제59차 회의

제3위 위원회, 항목 105(c)

Q Vitit

비티트

2004. 10. 28.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비티트 문다본 (Mr. Vitit Muntarbhorn)

발표문

2004년 4

통과시켰

위원회에

2004년 7

고, 이 요

았기 때문

다는 이

안 2004/13을

를 표명하고,

.

을 요청받았

진 시간이 짧

제출하기 보

-2004.10.28 Vitit 발표문

-CARITAS-홍콩; 2004.9 47차 북한방문

-Vitit 기자회견 내용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활동가/연구자 워크숍 2004.7.9
(강여경, 서보혁, 조성력, 김근식)

-뉴스클리핑; 북한인권법안 채택관련

-성명;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처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Food First 크리스틴 안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칼럼

-한반도인권회의 기타 회의록

이 일을 한 출처로부터 관리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양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대표들과 모임을 가졌다. 최근 2004년 9월에는 제네바에서 1주일 동안 머물면서 핵심인사들을 만났고, 비록 내 자격이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서라기보다는 학문적인 것이었지만 제네바에 있는 북한측 대표들에 대한 방문이 받아들여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북한 대표들과의 만남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관계자들에게 내가 전달한 메시지는 북한이 이번 위임명령을 세계,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엔과 관계를 가지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 특별보고관이(내가) 추진하는 일의 과정은 공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으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해당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일하는 건설적인 단계적 접근법에 기초해 있다.

내가 처음 받은 인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유엔 총회
제59차 회의
제3 위원회, 항목 105(c)

2004. 10. 28.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비티트 문다본 (Mr. Vitit Muntarbhorn)
발표문

2004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 2004/13을 통과시켰다. 인권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4년 7월, 나는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이 특별보고관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유엔의 위임명령에 따른 정보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단계에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이 연설을 대신 하기로 했다.

이 일을 맡은 처음 몇 달간, 나는 정부, 비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양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대표들과 모임을 가졌다. 최근 2004년 9월에는 제네바에서 1주일 동안 머물면서 핵심인사들을 만났고, 비록 내 자격이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서라기보다는 학문적인 것이었지만 제네바에 있는 북한측 대표들에 대한 방문이 받아들여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북한 대표들과의 만남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관계자들에게 내가 전달한 메시지는 북한이 이번 위임명령을 세계,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엔과 관계를 가지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 특별보고관이(내가) 추진하는 일의 과정은 공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으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해당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일하는 건설적인 단계적 접근법에 기초해 있다.

내가 처음 받은 인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 구조적 요소들

첫째, 우리는 구조적인 면에서 북한이 4대 핵심 인권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관련 감시위원회에 많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둘째, 북한은 외부의 인권활동가들이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를 위해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간헐적으로 허용해왔다. 유엔 측에서는, 2004년 아동권리 위원회의 회원들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받았다. 이보다 앞서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북한 방문을 위한 초청을 받기도 했다.

셋째, 북한에서는 다양한 유엔 기구들이 많은 이슈들에 관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둔이 국제적·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몇몇 측면에서 북한과 주변국 및 그 밖의 일부 국가들 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많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미 인권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법적·조직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72년에 도입되어 1992년과 1998년에 개정된 헌법과 다른 법들에 몇 가지 인권보장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핵심적 난제들이 있다.

B) 구체적 난제들

첫째, 식량권과 생명권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권력 불균형 및 권력구조의 부적절한 대응과 결합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끔찍한 식량부족을 겪었다. 이런 요소들은 북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생명과 생존을 위협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후반에 유아사망, 영양실조와 성장저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주요 인도주의 기관들의 자문을 통해 얻은 일반적인 느낌은 식량위기와 관련된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북한이 여전히 인도주의적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로부터 지원되는 식량원조가 얼마나 지원대상에게 실제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다른 (은밀한) 용도로 빼돌려지는 식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식량원조의 배분을 감시하기 위한 검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외국 인도주의 기관들의 불시검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개인의 안보권 (right to security of the person),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 차별금지의 권리, 사법정의에의 접근

이 분야에서의 위반에 대한 많은 보고가 다양한 출처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위반들은 특히 감옥이나 수용소 같은 법·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신뢰할 만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기회도 없이 이루어지는 예방적·행정적 구금 등과 같이 빈약한 법집행과 악습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개인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수많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자료 중 일부는 유엔 결의안 (특별보고관 위임명령이 개설된)의 배경이 되었는데, 이 유엔 결의안은 고문과 다른 비인간적 대우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제기된 몇몇 이슈들은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2차 보고서에 관한 2001년 최종보고』에서 표명했던 우려들을 확인하고 있다.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개념에 근거한 집단 징벌이라는 또 다른 우려스러운 관행에 대한 보고가 여러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정치적 또는 사상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가족이 함께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편, 헌법과 다른 법들이 차별금지원칙을 옹호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북한에서 사람들을 정부 당국이 선호하는 집단부터 경계인이나 “동요계층,” 그리고 가장 하단에 위치한 당국에 적대적인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었다는 많은 보고가

있었다. 이런 관행이 법으로는 폐지되었을지 모르나, 관행으로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피난처를 찾아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증언에도 나타나 있다.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나쁜 관행들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이미 많은 일본 국민을 납치한 것을 인정했으며, 일부 사건들은 양국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은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규명과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개인의 안보권과 인도적 대우와 차별금지에 영향을 끼치는 권리침해에 관해 접수된 수많은 보고를 보면, 심각히 우려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또한, 북한에는 주민들에게 사법정의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특별보고관이 이런 모든 보고와 주장들을 증명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분량의 보고와 관련 주장들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으며, 이들 주장들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일련의 권리침해의 유형을 제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계획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권리, 이주자들의 보호

일반적으로, 북한당국은 주민을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당국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비자나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을 어긴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이런 제약은 인권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 국민들은 두 가지 주요한 이유 때문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탈해왔다. 첫째, 정치적 압박과 박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망명하도록 만드는 추동요인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많은 북한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등의 많은 방법으로 망명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이들에 대한 체포와 본국으로의 귀환 또는 “강제송환” 같은 탄압으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려는 사람들은 전통적 국제법상의 “난민” 즉 박해

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 때문에 출신국을 떠난 사람들에 해당한다.

둘째, 1990년대 중반의 식량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타지로 떠나야만 했으며, 때로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도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출국비자 없이 본국을 떠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현장(sur place)" 난민 즉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신국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다.

난민보호를 위한 핵심적 국제규범은 강제송환금지, 즉 난민을 위험지역으로 되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망명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에서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바, 모든 나라에서 이 원칙이 효과적으로 준수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는 또한 불안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에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종종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희망하거나 생존수단을 찾고자 하는 이들 여성들이 밀입국과 인신매매의 제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중요한 우려사항이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법도 이미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발국과 도착국(북한과 중국, 탈출국과 체류국 : 역자주), 양측에서 밀입국과 인신매매 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기결정권, 정치참여의 권리, 정보획득의 권리, 의사표출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는 자기결정권의 고유한 구성요소로서, 이는 당국의 의지보다는 국민의 의지에 기초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국가가 더 우선시된다.

북한 당국은 정보획득이나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정부당국이 다양한 종교들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한다

는 몇몇 측면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지만, 그 자유화의 정도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2차 보고서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최종보고는 이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설명하면서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권리 : 여성과 아동

1995년 시작된 식량부족위기 전에 북한에서는 여성의 권리 및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 주요한 성과가 나타났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권리 를 악화시켜온 여성의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식의 믿음과 아동은 정부당국이 부과한 권력기반에 종속된다는 생각처럼 편견으로 가득 찬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를 집단은 많은 이유로 더욱 취약해졌다. 첫째, 식량부족위기로 많은 여성과 아동들이 직업이나 음식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버려진 거리의 아이들(일명 “꽃제비”) 또한 늘어났다. 둘째, 사람들의 거주이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로 인해 이들은 여행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경을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밀입국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넷째,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도착국(중국:역자주)에서 본국송환의 대상인 불법이민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출신국(북한:역자주)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 다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 하에서의 북한의 2차보고서를 검토한 뒤 내린 최근의 최종보고는 이런 우려의 많은 부분을 재확인하고 있다. 보다 긍정적인 언급으로는, 현재 아동의 건강과 영양상태와 관련해 상황이 약간 개선되었다는 것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환영받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몇십년간 북한에서 건설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 하지만, 인권의 이행에서 많은 다양한 불일치와 (몇몇 흉악한 성격의) 침해가 벌

어지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막고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즉각적인 초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이 시급히, 그러나 빠짐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북한은 자신이 가입한 4대 인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규약에 따라 설립된 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며, 다른 관련 규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법과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 민주주의,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탈군사화와 함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 사회가 정책결정 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치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법부를 설립하고, 피고인 또는 구금인이 사법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정부기구와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의 설립을 통해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사법행정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교도소 체계를 개선하고, 사형과 태형, 강제노동을 폐지하며, 예방적·행정적 구금과 정치범의 구금을 금지해야 한다.
- 외국으로의 이탈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박해와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을 떠나 밀입국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돌아온 사람들의 사회 재통합을 장려해야 한다.
- 외국인의 납치와 관련된 문제 같이,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 사법 집행자들과 대중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과 아동문제에 대한 의식, 비판적 분석력과 함께 인권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국가인권행동계획 같은 형태로, 사법 집행자들과 여타 권리기반에 인권을 존중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 방해받지 않는 접근과 투명한 감시를 허용하고 책임성을 높여, 식량원조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상집단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필요하다면, 특별보고관 및 다른 인권구조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개혁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필요하다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다른 기구들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북한이 위에 명시된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건설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 난민과 다른 탈북자들의 보호를 지지한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고, 최소한 현재의 난민보호수준을 유지하며, 망명신청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양자협정 및 여타 협정을 폐지한다.
-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통로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주통로를 장려하고, 피해자들에게 인간적 대우를 하면서 밀입국과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 최초 도피국에서의 정착과 제3국에서의 재정착, 안전하고 자발적인 본국귀환 등과 같이 난민을 돋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난민 및 이주자들을 돌볼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 투명한 감시와 책임성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기관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조와 지원이 취약집단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47th VISIT TO THE DPRK/NORTH KOREA (11 TO 22 SEPTEMBER 2004)

TRIP REPORT BY KATHI ZELLWEGER, CARITAS-HONG KONG

INTRODUCTION AND OVERVIEW

Caritas has been supporting the North Korean people since autumn 1995, initially with humanitarian aid only, but some time ago a gradual shift to rehabilitation and more long-term development-oriented projects started.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provided, as well as measures taken by the DPRK government, have brought about changes but substantial needs for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energy and transport remain crucial if the country is to achieve real and lasting improvements. Moreover, with the economic reform process that started in July 2002 new vulnerability patterns are emerging, creating challenges for the humanitarian aid agencies and the government.

Predictions by farmers and officials regarding this year's harvest are mixed and the annual FAO/WFP crop assessment mission is planned for October. Rice and maize prices fluctuate and inflation seems to be running out of control. The subsidized staple food from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rations were at 350 grams per person per day) provides a certain amount of social security for many, but getting sufficient food remains a difficult task for the majority of families. The food aid provided reduces social stress and sets capacity free for people to focus less on daily survival and more on future growth and quality of life.

The DPRK government also indicated that although humanitarian aid was still needed, more technical assistance and development-oriented support would be appreciated. To move such an agenda forward intensive and extensive consultations will be needed: to clarify requirements and conditions as well as improve the quality of interac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 Caritas believes that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work belong together and need to take place simultaneously.

The current Caritas DPRK appeal (SOA 19/2004) seeks cash donations of US\$2.3 million for key sectors such as food aid, agricultural and health. To date pledges and donations of US\$1.15 million or some 50 percent have been received and further contributions are still essential.

ITINERARY

- Pyongyang: FALU office, UN agencies (WFP, UNDP, WHO, UNICEF) government contacts (FDRC, GBCIO,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Health, Pyongyang Women's Trading and Garment Center, Songyo Textile Factory, Mangyongdae Textile Factory, Catholic Church service attendance), NGOs (ADRA),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e, British Embassy, Swedish Embassy, German Embassy, Czech Embassy, Tongil Market etc.
- Chagang province: Huichon Baby Home, Nam Chon and Dozagi Nursery
- South Pyongan province: Pyongsong Pediatric Hospital, Baby Home, Children's Center and Boarding School, family visit; Songchon School for Deaf Children; Sukchon Training Center for farm mechanics
- Kaesong City: Panmunjom, Baby Home, Boarding School, family visit, Kaesong City Hospital
- Return trip by train to Dandong, bus to Shenyang and flight to Beijing

FINDINGS AND OBSERVATIONS

General Impressions

Pyongyang seemed busier than usual with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at a surprise to meet a Hollywood producer there) and also a martial arts event being hosted. At the Tongil Market choices and varieties of all kinds of goods – from rice to TV sets - have increased and a signboard announced that new lots of soap, but also beds and mattresses, had arrived. Potential customers were busy comparing prices and a long bargaining process seemed part of any deal. Many were shopping, but many more could only dream of the numerous products available.

There is a tangible spirit of entrepreneurship; suddenly people present name cards, ask for business connections, and want to trade and deal.

More restaurants, not only in Pyongyang but also in other cities, have opened and the good ones are not empty.

Traffic away from the capital is still little and mostly rural lorries and buses transporting goods, although a few of the locally produced 'Whistle' cars were seen on the road.

Because of the ongoing energy shortage and outdated machinery, economic production has, in many places, almost come to a standstill. The two textile factories from which Caritas has been ordering children's clothing were operating. The workshops had sufficient space, decent lighting and the all-female work team was busy with orders from Japan. The management expressed interest to secure more business from Caritas as the factory output now affects the workers' salaries.

Visiting Panmunjom brought the reality of the divided Korea back, although a newly-erected green highway road sign now indicates that Seoul is some 70 kilometers away. A stroll around old Kaesong, the former capital of Koryo, with its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still intact, contrasts starkly with the skyscrapers and newly built districts of Pyongyang.

Comparing rural and urban areas, but also farmers with workers, poverty is no longer equally spread, a marked difference to visits to the DPRK in the mid 1990's.

The train ride from Pyongyang to Sinuiju and Dandong provided a good opportunity to observe the ongoing harvest; hardly any tractors or farming machinery were in use. In a number of places, storms and torrential rains had damaged and flattened rice fields.

In Sinuiju customs and immigration procedures were a test of patience and a similar exercise took place in Dandong, but in both locations officials were relaxed and friendly.

In summary, North Korea seems to be on the path to greater openness, but there is no official blueprint for change and signs are that the future will be a 'stop and go process' with internal unity fragmenting.

Relations with Counterparts

Officials from different ministries expressed interest in future Caritas collaboration and asked for more dialogue and a deeper involvement in the project planning. However, on 15 September,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FDRC) requested a meeting with all resident UN Agenc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 mission heads during which a new policy for assistance activities was articulated. For 2005, the DPRK government was not supportive of another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CAP), the present monitoring system needed simplification and the international NGO presence was to be scaled down. (As at the end of August, the international staff presence was 63 at UN Agencies, 14 for IFRC and ICRC, and 46 at NGOs: in total 123.)

Caritas had not been asked to join the meeting and was later informed that the Caritas cooperation was all right. Emergency aid was still needed and welcomed, but further consideration of more long-term, development-oriented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programs needed to be given.

The present situation for the aid community will require more dialogue with the DPRK government in order to clarify the implications of the 15 September announcement. The impact on the Food Aid Liaison Unit (FALU) at WFP – the Caritas in-country presence – can only be assessed at a later date.

It was regrettable that Caritas could not meet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pporting the Disabled (KASD) and HelpAge, two partners with whom collaboration is being considered. Moreover, the FDRC requested postponing the planned Caritas donor mission from October 2004 to 2005.

Food situation

Food aid provided to the DPRK between 1995 and 2003 is valued at approximately US\$ 2 billion. The country is not growing enough to feed its population and the forthcoming October FAO/WFP crop assessment will be crucial to determine future needs - although humanitarian assistance can never be a replacement for structural change, but can support transition periods.

While international support and improved harvests have removed the immediate threat of famine, levels of malnutrition remain high. The planned UNICEF/WFP nutritional survey to be conducted this fall will provide an important insight in the present causes of malnutrition in the DPRK and guidance for future interventions.

Newly-emerging vulnerable groups tend to reside in urban or suburban areas. Families visited reported an extremely high expenditure on food. In one case some 80% of the family income was spent on food; another family reported that 'only' half of the family income was for food as farming relatives provided regular support.

In general, the food basket of North Korean families remains unbalanced. The emphasis tends to be on cereals and more focus is needed on the availability of, and access to, proteins, fats and micronutrients.

Agriculture

No cooperative farms were visited, but officials met were of the opinion that this year's harvest was not as good as last year's. In some locations torrential rains, storms and hail had damaged the fields. Farm machinery was scarce; tractors, harvesting and threshing machines, trucks and other equipment are usually old and often beyond repair, with the ever-increasing energy shortage being another hindering facto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requested further support from Caritas for plastic sheeting for cooperative farms, input packages for individual farms and a further involvement in forestry (tree nurseries) in order to increase addressing environmental aspects. To arrange another meeting, once Caritas was planning a new appeal, was a need which was expressed, although the officials stated that no major changes were required in terms of collaboration with Caritas.

The joint project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German Agro Action, Caritas and Korea Dongsong Technical Trading Corporation) in Sukchon county, S. Pyongan province, for short-term courses for farm mechanics and drivers is gradually progressing, despite many teething problems. All equipment received has now been installed, but some work still needs to be completed. Preparations for the course curriculum and the training timetable have started with GAA assisting with upgrading teaching/training methods and materials. The first training period is planned for December 2004, with recruits from nearby farms.

Health

Five months after the train disaster, the city of Ryongchon has been rebuilt. Caritas, together with ADRA, WHO and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is involved in supporting the reestablishment of the Ryongchon Hospital. The new building, ready in spring 2005, will have 300 beds for inpatients and an outpatient department served by a staff team of 146. Caritas will contribute equipment and supplies and lists are presently being finalized.

Other health service units visited (a pediatric hospital and a general hospital) were in need of medicine, equipment, coal, diesel and also food. Staff reported that these days only few operations could be performed. The hospital buildings needed repair works, but there was no budget made available by the government. Despite the many difficulties, the general hospital gave the impression of being busy and a team of engaged and friendly staff members showed the visitors wards, operation theatres, laboratories, pharmacies and other departments.

The Ministry of Health thanked Caritas for the support provided, especially for the county hospitals. Furthermore, the two sets (44 videos each) on a variety of health education topics for the training of doctors and nurses were highly appreciated. Not only was the content excellent, health staff was at the same time also learning English, particularly the medical terms. Thus, the Ministry of Health asked to receive 12 more sets of these videos for the medical universities in the country.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Baby homes, children's center and orphanages visited had fewer malnourished children, but did contain quite a number of weak and sickly cases. Baby homes no longer accommodate mostly orphans but tend to be used also as feeding centers or even for day-care places for children from nearby areas. Fees charged for some day-care children may also provide an extra income for the baby homes. (Regular day nurseries reported fees of Won 130 per child and month. Monthly salaries are mostly around Won 2500)

Growing up as an orphan in a boarding school is hard anywhere. Male principals who are obviously not used to running a home manage a number of boarding schools. The schools are usually run down and lack any 'homely' atmosphere with children who are not only extremely stunted, but also dirty and smell badly.

Caritas donations of canned fish, sugar, clothing, soap, toys and diapers and PVC flooring were observed, with shoes being another desperate need. The canned meat received from MCC was praised and even for the empty cans there was a market. Staff also asked for increased rations of meat and canned fish.

Songchon School for Deaf Children

The above residential school was visited, together with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Association supporting the Disabled (KASD). Nine years of education is offered to 239 students (98 children are in the primary, and 141 in the secondary section) from S. Pyongan province and Pyongyang City. The school principal and, the education officials as well as the county FDRC expressed interest in a Caritas collaboration.

Children are taught the usual school curriculum, but in sign language and also with some speech training. Hair-cutting, painting, sewing, carpentry and photography are also part of the subjects taught, but the outdated and often dilapidated teaching and training equipment needed replacement.

Cereals are allocated to the school by the government and vegetables are grown in the school garden. In a simple and poorly equipped kitchen, staff was busy preparing lunch for 72 students and the cook only smiled when asked about meals with meat or fish. The children observed in the classrooms and dormitories were all very small, some looked deprived and sick.

Needs are manifold: additional food, coal, blankets, kitchenware, equipment for education (visual materials) and for vocational training etc., but it was encouraging to see the teachers trying their very best with very little.

Access, Monitoring and Targeting

During the 10-day visit, access to institutions and beneficiaries was generally good and officials at the various levels were appreciative of the assistance received. The quality of interaction is improving, but the need for continuous dialogue remains. There is a tendency to present "the ideal world" rather than to admit difficulties encountered. Even if the problems are obvious to a visitor, the concept of "face" and "saving face" takes prevalence.

With more markets, small stalls, shops and vendors, the risk that food aid is sold or bartered is increasing and thus monitoring remains important. But equally important are needs and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determine future directions.

Caritas geographically targets the east coast, namely the provinces of Kangwon, South Hamgyong, North Hamgyong and Ryanggang. It is, however, noticeable that certain regions near Pyongyang tend to be affected negatively by the needs of the residents of the capital. Pockets of poverty exist in the whole country with availability and access to food a big problem for the non-farming population.

CHANGES

After nine year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he DPRK does not like to be viewed as an aid-dependent country any longer and resents the monitoring requirements and foreigners that go along with the assistance. The wish for development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s now stated, but less clear is if the government understands that development assistance requires more policy dialogue, data and information, greate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a collaboration in the spirit of true partnerships.

The current tense situ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humanitarian aid community has to be seen within a wider context. The prolonged standoff over the nuclear weapons program, the deadlock with the six-way talks, the increased number of defector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passed by the US Senate recently) and the Iraq war, are all part of hindering circumstances.

CONCLUSION AND RECOMMENDTIONS

Changes in North Korea are taking place, but moving forward will be in a cycle of loosening and tightening actions. Aid agencies like Caritas will need to find creative ways of staying engaged: helping people in need and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dialogue, but also accepting that at times tensions are running high and relations can turn chilly.

North Korea is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It is important to try understanding the situation taking both culture and history into account. The North Korean people also have their dreams, hopes and aspirations, but also disappointments, fears and worries. Adapting to change is for many a real challenge. While earlier the deprivation was equally shared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now a situation with have and have-nots, or winners and losers, is developing. Caritas assistance remains crucial in such difficult times.

The 2004/5 Caritas appeal was launched in April 2004. For the Ryongchon train disaster victims an amount of US\$200,000 was requested and this target was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For the annual program the amount needed is US\$2.3 million and so far only about 50 percent has been pledged or received.**

PLEASE CONTINUE SUPPORTING THE CARITAS APPEAL!

Hong Kong, 25 October 2004/kz

Kathi Zellweger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aritas-Hong Kong
2, Caine Road, Hong Kong
Tel. (852) 2522 9211 / Email zellweger@caritas.org.hk

DPRK – 47th VISIT. SEPTEMBER 2004

Mr. Vittit Muntarbhorn,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UN특별보고관(이하 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보고관이 임명된지 2달 여 동안의 활동 내역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한 후
보고내용의 요지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고관은 객관적인 입장
을 견지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피하고 있다.

보고관은 보고를 위해 주제네바북한대사를 비롯한 여러 관료, 학자, 전문가들을 만났음을
밝히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인상을 건설적인 측면과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보고관은 북한에 입국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초대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기꺼이
방문하겠다고 한다.

-건설적인 측면은

첫째, 북한이 4개의 안권조약(A규약, B규약, 여성인권규약, 아동인권규약)의 당사자로서
UN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중 A규약, B규약, 아동인권규약 회의에 출석했으며 북
한에 대한 권고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둘째, 아동인권위원회를 평양에 초대하여 활동하도록 한 것

셋째, 평양에 몇몇 유엔기구가 주재하고 있다는 것

넷째,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 메커니즘(헌법)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헌법이 어떻게 집
행되고 있는가는 더 보아야 할 문제이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첫째, 식량부족으로 인한 Right to Life, 생명권의 문제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을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과정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가 필요하다.

둘째, Right to Liberty, 자유권, 특히 Security of Person, 신체권의 문제이다. 이는 불법
구금, 열악한 구금 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과 아동, 외국인(일본인 납치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의 자유권, 신체권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실
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인 주장들을 볼 때 우려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셋째, 난민의 문제이다. 난민에는 유엔 체제 하에서 정식 난민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불
송환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적 난민과, 국제법상으로 아직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지 못한
경제적 난민이 있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정
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들을 '잠재적 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접근과 보호가 허가되어야 하며, 인접국이 거부할 경우 제3국이 이
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많은 여성 난민은 납치, 인신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
므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넷째, 언론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등 다른
시민적 권리의 문제이다. 이는 북한과 같은 닫힌(non-open society) 사회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닫힌 사회는 인권을 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 권리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에 최근 시민권, 특히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유화 움직임이 있는 것
으로도 보이나 진정한 자유화인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다섯째,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이다. 90년대 중반 이전,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 상
황은 비교적 양호했다고 알려져 있다. 질적인 측면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양적으로 볼
때 북한 아동의 취학률은 90% 정도였다. 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국내외
난민이 증가하면서 유랑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아동은 불법 이주를 이유로 구금, 처
벌되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국제법과 인권규약(A규약, B규약, 아동규약, 여성규약 등)을 준수하는 것

둘째, 북한내의 인권 관련 법과 관행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수정하는 것

셋째, 균형과 견제, 투명성 등 法治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특히 형사처벌 등 법의 집행
과정에서)

넷째, 이주자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UN난민고등판무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 이를
위협하는 양자조약(북-중간의 난민송환조약을 얘기하는 것인듯-민선)이 있다면 UN시
스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

Q 1) 3위원회에서 북한의 태도는?

- 북한은 특별보고관 임명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허락할 경우 나는 언제든지 조사과정에서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Q2) 당신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최초의 특별보고관인가?

- 개인적으로 다른 인권문제(아동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해 본 적은 있다. 나는 어떠한 정치적 부담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Q3) 특별보고관의 종립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나는 UN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쓰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Q4) 북한 식량 문제에 관한 질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질문은 더 나은 감시 체계와 함께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Q5)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보고관의 임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다. 나는 개별 국가의 법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법에 관해 보고서에서 언급하지도 않았다. 나의 임무는 다자적 임무이고, UN의 방식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개별국가의 접근 역시 UN의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Q6) 영양 실조 어린이에 대한 식량공급이 효과가 있는지?

북한에 지원되고 있는 식량이 영양실조 어린이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진위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약 650만의 여성과 어린이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에 북한의 영양 상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최근에 영양실조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원조로 인해 영양실조가 줄었다고 생각한다.

Q7) 당신의 전공은? 북한에 대한 지식은?

내 상세 이력을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난민법을 전공한 태국의 법학 교수이고, 1987년 남한 선거에 선거감시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

Q8) 통계 자료는 얼마나 이용 가능한가?

NGO 등에서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았다

Q9) 북한의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가? 최악의 상황인가?

개별국가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는 자체가 그 나라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 인권을 스스로 지키는 헌법체제가 있으나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인권 상황에 대해 지금 입증 가능한 평가를 할 수는 없으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

Q10)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은? 인권 침해 정도는?

여성규약, 아동규약과 관련하여 북한이 제출하는 보고서, NGO 보고서, UN 보고서 등이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90년대 중반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이 '닫힌 사회'라는 특수성은 (여성과 어린 이를 포함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Q11) UN은 중국 내 북한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정확한 답은 UNHCR에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정치적 난민은 당연히 난민이다. 경제적 난민은 단순히 불법이민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국에 돌아가서 빨리 될 박해를 감안하면 이들은 잠재적/실제 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UN은 아직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접근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난민조약 당사자로서 이들 난민에 대해 좀더 인도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Q12) UN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이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난민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법 규에 얹매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Q13) 북한은 식량지원등을 위해 유엔기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했다. 이것을 북한 개혁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

- 북한은 올해 아동권위원회를 초청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상황의 개혁은 청소년 교도 시설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유엔 시스템과 인권관련 법규의 안에서 개혁하기를 바란다.

Mr. Vittit Muntarbhorn,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UN특별보고관(이하 보고관)의 기자회견
배경 : 보고관이 임명된지 2달 여 동안의 활동 내역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한 후
보고내용의 요지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고관은 객관
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피하고 있다.
보고관은 보고를 위해 주제네바북한대사를 비롯한 여러 관료, 학자, 전문가들을 만났음을
밝히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인상을 건설적인 측면과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보고관은 북한에 입국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초대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기꺼이
방문하겠다고 한다.

-건설적인 측면은

- 첫째, 북한이 4개의 인권조약(A규약, B규약, 여성인권규약, 아동인권규약)의 당사자로서
UN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중 A규약, B규약, 아동인권규약 회의에 출석했으며 북
한에 대한 권고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둘째, 아동인권위원회를 평양에 초대하여 활동하도록 한 것
- 셋째, 평양에 몇몇 유엔기구가 주재하고 있다는 것
- 넷째,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 메커니즘(헌법)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헌법이 어떻게 집
행되고 있는가는 더 보아야 할 문제이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 첫째, 식량부족으로 인한 Right to Life, 생명권의 문제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을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과정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가 필요하다.
- 둘째, Right to Liberty, 자유권, 특히 Security of Person, 신체권의 문제이다. 이는 불법
구금, 열악한 구금 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과 아동, 외국인(일본인 납치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의 자유권, 신체권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실
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인 주장들을 볼 때 우려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 셋째, 난민의 문제이다. 난민에는 유엔 체제 하에서 정식 난민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불
송환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적 난민과, 국제법상으로 아직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지 못한
경제적 난민이 있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정
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들을 '잠재적 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접근과 보호가 허가되어야 하며, 인접국이 거부할 경우 제3국이 이
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많은 여성 난민은 납치, 인신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
므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넷째, 언론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등 다
른 시민적 권리의 문제이다. 이는 북한과 같은 닫힌(non-open society) 사회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닫힌 사회는 인권을 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 권리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에 최근 시민권, 특히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유화 움직임이 있는 것
으로도 보이나 진정한 자유화인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다섯째,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이다. 90년대 중반 이전,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 상
황은 비교적 양호했다고 알려져 있다. 질적인 측면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양적으로 볼
때 북한 아동의 취학률은 90% 정도였다. 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국내외
난민이 증가하면서 유랑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아동은 불법 이주를 이유로 구금, 처
벌되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 첫째, 국제법과 인권규약(A규약, B규약, 아동규약, 여성규약 등)을 준수하는 것
- 둘째, 북한내의 인권 관련 법과 관행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수정하는 것
- 셋째, 균형과 견제, 투명성 등法治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특히 형사처벌 등 법의 집행
과정에서)
- 넷째, 이주자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UN난민고등판무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 이를
위협하는 양자조약(북-중간의 난민송환조약을 얘기하는 것인듯-민선)이 있다면 UN시
스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

Q 1) 3위원회에서 북한의 태도는?

- 북한은 특별보고관 임명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협력할 경우 나는 언제든지 조사과정에서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Q2) 당신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최초의 특별보고관인가?

- 개인적으로 다른 인권문제(아동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해 본 적은 있다. 나는 어떠한 정치적 부담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Q3) 특별보고관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나는 UN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쓰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Q4) 북한 식량 문제에 관한 질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질문은 더 나은 감시 체제와 함께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Q5)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보고관의 임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다. 나는 개별 국가의 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법에 관해 보고서에서 언급하지도 않았다. 나의 임무는 다자적 임무이고, UN의 방식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개별국가의 접근 역시 UN의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Q6) 영양 실조 어린이에 대한 식량공급이 효과가 있는지?

북한에 지원되고 있는 식량이 영양실조 어린이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진위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약 650만의 여성과 어린이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에 북한의 영양 상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최근에 영양실조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원조로 인해 영양실조가 줄었다고 생각한다.

Q7) 당신의 전공은? 북한에 대한 지식은?

내 상세 이력은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난민법을 전공한 태국의 법학 교수이고, 1987년 남한 선거에 선거감시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

Q8) 통계 자료는 얼마나 이용가능한가?

NGO 등에서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았다

Q9) 북한의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가? 최악의 상황인가?

개별국가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는 자체가 그 나라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 인권을 스스로 지키는 헌법체제가 있으나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인권 상황에 대해 지금 입증 가능한 평가를 할 수는 없으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

Q10)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은? 인권 침해 정도는?

여성규약, 아동규약과 관련하여 북한이 제출하는 보고서, NGO 보고서, UN 보고서 등이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90년대 중반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이 '닫힌 사회'라는 특수성은 (여성과 어린 이를 포함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Q11) UN은 중국 내 북한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정확한 답은 UNHCR에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정치적 난민은 당연히 난민이다. 경제적 난민은 단순히 불법이민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국에 돌아가서 받게 될 박해를 감안하면 이들은 잠재적/실제적 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UN은 아직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접근이 협력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난민조약 당사자로서 이들 난민에 대해 좀더 인도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Q12) UN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이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난민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법 규에 얹매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Q13) 북한은 식량지원 등을 위해 유엔기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했다. 이것을 북한 개혁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

- 북한은 올해 아동권위원회를 초청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상황의 개혁은 청소년 교도 시설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유엔 시스템과 인권관련 법규의 안에서 개혁하기를 바란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활동가/연구자 워크숍 토론 내용 정리

● 날짜 : 2004년 7월 9일(금) 낮 3시~6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 : 김동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 김동균(민변), 김근식(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서보혁(한국정치연구회),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정대일(크리스챤 아카데미), 박정은(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맹행일(참여연대 회의), 이성진(스탠퍼드 대학),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조계창(연합뉴스), 정용욱/손상열(평화인권연대), 강여경/노육재/이승용(좋은벗들), 박현희(안산노동인권센터), 슬기(이대 대학원), 김유성(숙대), 김범수(CNKR,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최신애(대학원 준비 중), 장연희(민변), 현시내, 이소형(사회진보연대), 최은아/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이화영(조지 메이슨 대학), 오정록/최민(평화네트워크), 김진환/오미숙(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김치관(통일뉴스), 정상훈(천주교인권위원회), 이경수(민족21), 장윤선(오마이뉴스) 등

● 발제 및 지정 토론 내용

==> 발제 및 지정 토론의 전반적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발표자, 토론자들의 제안을 정리함.

주제 1.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과정 평가와 향후 전망

○ 발표자 : 강여경 (좋은벗들 국제연대부부장)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인권 관련 논의를 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전문적 협력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예: 동북아 지역의 인권교육 프로젝트)이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한국정부도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NGO들은 구체적 원칙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 토론자 :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① 국제무대에서는 인권문제조차 자국의 이익이나 외교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권력정치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관련 NGO들이 시각, 접근방향, 우선순위, 프로그램 등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② 다른 시안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와 NGO간 역할 분담은 상호 견제 및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인권의 보편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그 반면에 북한인권 혹은 한반도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국제 NGO와의 협력도 하나의 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국제인권 NGO와의 협력은 (1)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NGO 차원의 평가를 공유하고 (2) 북한인권 관련 정보에 객관성과 균형성을 마련하여 (3) 관련국 혹은 유엔의 판단에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북한인권 평가가 국제 NGO와의 공동 작업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주제 2.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의 연계

○ 발표자 :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① 미국의 대북 특별법이 탈북자 및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국한도록 설득해야 한다.

②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는 대북 유엔인권결의 수정안을 주도한다. 인권존엄성 재고를 위해 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적 권리의 강조는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북한과 같은 경제적 빈곤국에 대한 압력 명분이 될 수 있다. 2005년도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식량난을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도적 식량, 의료,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 장마당의 합법화와 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경제적 권리를 회복한 뒤,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는 단계적 방안을 국제사회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③ 국내 보-혁 갈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북 지원활동이나 인권단체에 대해 정부가 그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의법조치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벌써부터 국내 대북 지원단체들 간의 경쟁도 예상된다. 국내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미국 기관이나 단체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과장치가 필요하다. 미국 기관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시민단체나 탈북 지원 NGO 등이 접촉사실을 정부에 알리면 별도의 편의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탈북자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난민보호법 마련 및 통일부 외청으로서 난민청 신설이 필요하다.

○ 토론자 : 김근식(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① 장기적으로 북한인권의 신장은 북한경제의 회복과 경제발전을 통해 내적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민주화 주체로서의 북한주민의 의식과 실천이 발전되는 경로를 통해야 할 것이다.

② 북한인권의 향상을 위해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증대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기 남북화해의 진작과 상호신뢰의 회복이 과거 냉전적 대결과 상호 불신보다 정당한 방향임은 바로 북한인권 개선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 자유 토론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 한반도인권회의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한반도인권회의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이화영(미국 버지니아 주 조지메이슨 대 분쟁학 전공) : 최근 미국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인권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사례가 모두 그랬다. 2003년, 2004년 부시 정부는 한반도 북쪽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나? 진보진영이 북한인권에 대해 이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 보수 진영과의 연합은 무리다. NED 기금을 받고 있는 단체와의 연대는 불필요하다. 미 의회, NGO 내부의 진보진영과의 연대, 그리고 좋은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국제앰네스티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활용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탈북자들 중에서도 신빙성 있는 증언이 나올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 우리조차도 정치적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김범수(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 소위 보수적 입장의 단체에서 일한다. 진보 그룹에서 토론한다고 해서 왔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가 키 이슈다. 북한의 실상. 실태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1인 독재체제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북 주민의 실상에 대해 가슴 아프게 느끼고 난 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체제 봉파나 경제 지원이나 각 그룹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진보 그룹이 '반미'를 전제로 깔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 같다.

· 조계창(연합뉴스) :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의 신빙성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다.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진보단체에서 사실 검증을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다. 보위부 출신 탈북자들 중에서도, '고문을 한다/안 한다' 증언이 엇갈린다.

· 이승용(좋은벗들) :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실태 그 자체에 대해선 의견이 별로 없다. 탈북자들은 식량난민/정치적 난민이 혼재돼 있음. 공개처형이 빈번했으나 최근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는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직접 현지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탈북자 증언이 어느 정도 북한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 인권단체라면 국가 주권보다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 사회자(김동균, 민변) : 실태에 대한 판단 다음에 원인을 보고, 해법을 찾을 텐데, 원인에 대해서 보자면 상이한 시각이 있다. 원인을 김정일 체제에 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체제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중요도도 다르다고 보며 북한의 '우리식 인권'도 그 나름의 특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 박정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1)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반미 의식 때문에 법안을 반대했나하면 그렇지는 않다. 북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우리도 갖고

있다. 자료수집, 실태 파악을 통해 연예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자는 생각이다. 2)미 의회가 제정한 법안은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 갈 것이므로 매우 위험하다. 미국 의회에 적절한 의원들, NGO와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초기 단계에 있다. 3)다른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 이화영(조지메이슨 대학) : 인권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문화의 차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양의 기준으로 인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중국, 북한의 공개 처형은 미국 분쟁학 교과서에서도 문화의 차이로 인정한다. 단순히 서구적, 미국적 시각으로 이러한 것을 판단해선 안 된다. 북에 인권 침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대 포장돼, 폐권주의/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 막는 것이 시급하다.

· 조계창(연합뉴스) : BBC가 생체 실험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근거가 없다고 본다. 외신이 이러한 문제를 퍼뜨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이승용(좋은벗들) : 공개처형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공개처형 감이 아닌 사람을 공개처형하는 것이 문제이고 인권침해다.

· 맹행일(참여연대 회원) : 북한의 농기계 수리공장에서 필요한 것은 용접봉인데, 우리가 용접봉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쿨린 파월과 백남순에게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라이스는 핵 폐기 시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 유지를 약속할 수 있다고 했다. 북의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경제봉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

· 사회자(김동균, 민변) :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1)국내 단체들이 탈북자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통해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공유해야 한다 2)미국 등지의 진보적 의원과 NGO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 서보혁(한국정치연구회) : 1)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실천 과정을 해 나가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2)보편적인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정치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라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3)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 특정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화론'을 옹호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진보 진영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상훈(천주교인권위) : 북한인민들의 실제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차원과 북한 인권을 정치화시키는 국제사회의 개입주의를 방지하는 차원이 있는 것 같다. 처음엔 두 번째 차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인데, 북 인권 실태조사를 민간 차원에서 해 보자는 것, 국제 연대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 또 살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를 지원하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원하자는 이야기에 많이 공감한다.

· 김치관(통일뉴스) : 오늘 이 자리에서 아쉬운 것은 통일연대, 범민련 등 통일운동 관계자가 없다는 점이다.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 초기에 북한자유법안/인권법안 대응 시엔 통일연대가 함께 했었다. 오늘 토론회에도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다른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하신 것 같다. 한반도인권회의(가칭)에서는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당연히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

· 최민(평화네트워크) : 남북경협 관련 토론에서 유정애 선생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직접 북 주민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 농업을 문제를 지적하며 유기농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경협을 통해 남한 기업이 진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어와 감시가 필요하다. 관련 법을 제정하고, 지원과 협력이 북 주민의 실질적 상황 개선,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손상열(평화인권연대) : 인권 문제는 그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공화당, 민주당의 대 한반도 정책은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 남북의 사회 통합 없는 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것, 식량 지원과 함께 맞물리는 인프라 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인권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북 인권 문제도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양상이 다를 것이다. 앞으로 노동권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장여경(좋은벗들) : 북 정부의 태도가 진전되고 있다. 조약기구 심의에의 참가 등 인권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낙관한다. 국제사회의 메카니즘을 통해 북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유효하다. 한반도가 인권적,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모색하자.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 여전히 어렵게도 함께 하고 싶었던 단체나 개인들이 다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른바 전보적인 인권, 평화,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북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본다. 오늘 많이 이야기됐듯이, 미 의회가 추진 중인 북한특별법안에 대한 대응, 북 인권에 대한 실태 파악, 자료 수집, 내용 생산, 국제 인권단체들과의 협력, 해외 언론에 대한 대응 등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지금 '한반도인권회의'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로는 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단체들이 더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활동가/연구자 워크숍

사회 : 김동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제 1.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과정 평가와 향후 전망

○ 발표자 : 강여경(좋은벗들 국제연대부장) (p1~3)

○ 토론자 : 서보혁(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p4~9)

주제 2.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의 연계

○ 발표자 : 조성렬(국제조사문제연구소) (p10~41)

○ 토론자 :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p42~46)

- 날짜 : 2004년 7월 9일(금) 낮 3시~6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함께 준비한 단체들 : 한반도인권회의(가칭) :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그 외 관심 있는 개인들

자유 토론

발표자, 토론자 및 참석자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문]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과정 평가와 향후 전망

강여경 (좋은벗들 국제연대부장)

배경

대북결의안의 발단은 작년 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시작되어 북한의 인권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에서 발의한 59차 북한인권결의안은 식량권, 고문,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제도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문안도 자극적이며 국가별 특별보고관이 포함되면서 유엔인권위원회가 한 국가에 관련되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를 통과시킨 데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 발표문은 유엔인권위원회 사전과 사후에 걸쳐 각국의 외교사절단과 논의한 것과 직접 인권위원회에 참가하면서 관찰했던 것을 토대로 작성하여,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돋보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9번 의제

이번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9번 의제: 각 나라별 인권침해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회의초반부터 중국을 비롯한 'like-minded group':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강하게 제기 되었다. 9번 의제는 구체적인 인권사안을 생⎜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한 국가를 명명하여 'naming and shaming game'으로 훌리 그 나라를 망신을 주는(bullying)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쓰일 뿐 실제 인권개선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한 나라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외교관들은 문제학생을 제도하는 선생이라는 비유를 했다.

북한은 9번 의제에서 발의된 이 결의안을 59차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선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도전'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발언한 조선 외교관의 발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며 전면적으로 거부해 왔다.

인권결의안 발의과정

유럽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4년 1월과 2월 사이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유럽연합회의에서 결

의안 1차 초안이 만들어졌다. 모든 유럽연합회원 국가들은 이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의 동의 하에 초안을 완성하므로 유엔인권위원회 기간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 하는 것은 어려웠다.

흥미로운 것은 인권위원회에 참가하기 전에 국내의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호주, EU의 외교관들과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북 인권결의안 초안이 그리 강경하지 않다고 했었다. 특히, EU외교관들은 특별보고관을 상정하자는 프랑스의 의견이 전체 EU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월 18일 만남) 특별히 이야기해 주었다. 즉, 2차 초안은 1차 초안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는 점이고 이 보완했던 부분이 인권위원회 초반에 있었다는 것이다. 보완된 부분은 '유아살해' 등 선정적인 용어의 반복적인 사용과 국가 특별보고관 지정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

결의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로, 영국은 유럽연합 이외에 영 연방 국가들과도 연대하여 북 인권을 인권위원회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번 60차 인권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영국 외무부의 한국 동포 담당과장은 '어차피 북한정부가 결의안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 내용이 자극적이든, 편향적이든 상관이 없다'며 인권을 통한 정치적인 압박의 태도를 확고히 했다.

북 인권 결의안과 관련 유럽연합에는 대화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국가와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측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60차 결의안에 대해서는 강경파가 우세했다고 한다. 이후 북과 대화 위주의 외교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유럽연합 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인권위원회에서 NGO의 역할 좋은벗들/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단체는 좋은벗들과 북한인권시민연합이었다. 물론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미국의 주빌리, US 북한인권위원회와 크리스챤 솔리데리티가 함께 연대해서 진행했지만, 밖으로 로비하는 것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직접 외교관들과 논의를 하고 구두발언을 했다. 기본적으로 좋은벗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편향되어있는 북한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식량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지속적인 인도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인권위원회 참가 목적이었다. 반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결의안이 좀 더 많은 국가들의 후원을 받아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내용의 수정을 꾀했던 좋은벗들의 활동은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이미 국제사회 전반에 있는 반복적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외교관들과의 만남에서도 개인은 이해를 하고, 타당성을 동의를 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미 연합체의 흐름과 함께 하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을 내는 것은 어려웠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었지만, 한국은 북한결의안 문안회의에도 참관만 했을 뿐 내용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인권에 대한 북한정부의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난 59차 결의안이 채택된 이 후, 북한은 지난 2003년 11월에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심의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이 후 2004년 6월에 진행되었던 아동권 조약이행 심의위원회 이전에 심사위원회들을 북으로 초청하고 (2004년 4월) 이어서 심의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제까지 북한은 조약이행 심사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다.

그러나 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문항에 포함된 사항은 이전에 해오던 것들도 원천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실무자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이전에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독립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었으나, 결의안에 인권고등 판무관과의 전문적인 협력 부분이 포함된 이후에는 오히려 대화의 창구가 닫혀졌다고 한다. 또 한 국가 특별보고관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 북한도 미안마와 같은 전례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를 했다.

이런 우려와 함께 60차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29표, 반대 8표, 기권 16표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 지난 6월 15일 경제사회이사국에서도 28표의 찬성, 6표의 반대와 19표의 기권으로 이사회에서는 북한에 국가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향후 특별보고관이 임명이 되면, 임명과 거의 동시에 결의안에 명시된 사설규명 멘데이트(mandate)에 따라 이행계획을 9월 유엔정기총회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집행에 대한 보고를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북한에서 특별보고관을 초청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외부 단체나 소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로?

결론적으로 평가해 보면 유엔의 인권결의안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나 자유법안처럼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북의 봉고를 피하는 데에 반해 유럽연합은 십여 년간에 걸친 '조용한 외교'의 방향을 바꾸어 '길들이기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유럽연합의 관련된 국가들은 북한이 조금의 돌출구(concession)만 열어주면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도 있겠다고 한다. 관련 외교관들은 북한과 공생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국제사회의 규칙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60차 결의안을 감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강경하게 재정된 결의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보다는 정치적인 힘겨루기와 긴장감만 더하고 인권개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인권 관련 논의를 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전문적 협력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예: 동북아 지역의 인권교육 프로젝트)이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정부도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토론문]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과정과 향후 전망'

서보혁(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1. EU와 유엔에서 북한인권 논의 경과

EU는 2001년 북한과 인권회담을 갖거나 EU인권세미나에 초청하면서 인권대화를 해왔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2002년 6월에는 북한과 인권문제의 지속적 협의에 합의하였다.

EU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2002년)에서는 북한이 EU와 인권대화에 건설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인권관련 포럼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북한내 인권상황의 전개를 매우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미국은 처음으로 유엔 인권위 위원국에서 탈락하였음.

EU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기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관련 포럼(relevant forum)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북한 내 인권상황의 전개를 매우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U는 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2003년)에서는 의장국인 그리스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회원국 대표의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인권위의 관심 및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EU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여 통과시켰다.

53개 위원국 가운데 28개국이 찬성, 한국은 북한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참하였다. 이때 유엔 인권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던 동구권과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이 북한결의안에 지지의사를 표시한 공동 제안국에 대거 포함된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2.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쿠바 대표는 대북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 존중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적대상황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표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북한당국은 그것을 완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고무하여야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비난과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대북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반면에 미국대표는 대북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곤경과 북한 정권의 억압성을 고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작년의 결의안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위반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대표 역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작년 결의안 내용 중 북한이 남치자문제에 대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북한대표는 1)결의안이 인권과 무관한 정치성과 편파성을 띤 것이라고 전제하고, 2)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3)인권위원회에 서는 참다운 인권 보호의 원칙보다는 편파성, 정치성, 이중잣대가 우세하고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동 위원회의 신뢰성을 위협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표는,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고려해 기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기권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대화에 기초한 포용(engagement)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북한이 인권 개선과 그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알려진 바와 같이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고문, 자유, 아동, 여성으로 균형을 이루던 작년의 결의안에 비해, 자유권 특히,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여성인권도 인신매매, 강제낙태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 혐의를 거론하고,
- (2) 외국인남치 관련 의혹의 해결을 촉구하고,
- (3) 국가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유엔 총회와 인권위에 보고할 것과 북한이 각주제별·국가 특별보고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을 요청하고,
- (4) 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과 인권분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갖고 그 결과를 제61차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투표 결과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 찬성국: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부坦,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프랑스, 가봉,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폐루,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

* 반대국: 중국,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수단, 짐바브웨 등

* 기권국: 바레인, 부키나 파소, 콩고, 에리테리아, 이디오피아, 인도, 마우리타니아,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한국, 시에라레온, 남아공화국, 스와질란드, 토고, 우간다 등.

작년에 비해 찬성이 1표 많아졌고 반대표는 작년에 비해 2표가 줄고, 공동체인국은 작년 38국에서 금년에 42국으로 늘어났다.

3. 유엔 인권 전문가의 역할(UN Fact Sheet No. 27)

○ 임기

국가별 임무(mandate)는 인권위에 의해 연례적으로 심의되며, 주제별 임무는 3년마다 심의됨. 임기가 연장되기 위해서 인권위는 임무를 심의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999년 4월 유엔 인권위는 전문가의 임기를 6년으로 재한하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 변환적 조치로서 3년 추가 연장을 가능하도록 함. 위원회는 실무그룹의 전문가 역시 3년의 기간동안 업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재편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 역할

모든 인권전문가들은 인권위, 유엔총회와 같은 정부간 기구에 실태조사, 결론 및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함. 일부 전문가들은 개념적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일부는 보다 실질적인 접근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어진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당사국 방문, 인권침해 피해자로부터 사례수집 및 검토, 정부당국에 개입의 순서를 밟음.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 긴급청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특정 인권침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긴급한 경우 정부당국에 긴급청원을 하기도 함. 일부 전문가들은 1년에 백여번의 개입과 청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러한 대화요청을 인권위에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보제공자와 정부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당사국 방문

국가별 전문가가 당사국을 방문하는 것이 우선적이나, 난민 및 관련 행위자의 인터뷰를 위한 당사국 혹은 인접국가로의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유엔의 예산은 1년에 1~2회 가량 당사국을 방문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추가예산으로 추가방문을 허용하기도 한다.

인권위는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이 다각적 검토를 요하는 일인 경우, 일부 인권전문가들에게 합동조사를 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 규범적 업무

일부의 인권전문가들은 권위 있는 규법과 기준을 개발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함. 국내추방자 문제를 조사하는 사무총장 대표는 국제 범률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추방과 관련한 법률기준을 분석하고 편집, 후에 이를 임대성해 “국내추방자의 보호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한 바 있다. 1998년 4월 인권위에서는 동지침서에 대해 논의하고, 기구간 상설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는 동지침서를 지지하고 회원국간의 공유를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후속조치

인권전문가들은 사실확인과 권고를 위해 정부와 대화를 유지함.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훨씬 의미있는 대화가 되기도 한다.

- 비정부행위자

전문가들은 정부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임무에 따라 비정부행위자를 다뤄야하는 경우도 있다. 1996년과 2000년 사이 소말리아 독립전문가는 군벌(warlord)과 군사지도자에 의해 자행된 침해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중앙정부가 부재한 동안 유엔기구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 비정부기구의 역할

국제·지역·국내 비정부기구는 인권위 특별절차에 중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인권단체들은 특정 인권 현안에 대한 임무 창설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전세계 여러나라의 주제별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들은 유엔의 인권전문가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정보에 대한 관련 당사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보내지기도 한다. 비정부기구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역사회에 배포하기도 한다. 비정부기구의 시스템 강화에 대한 공헌은 정부와, 인권전문가, 유엔이 인정하고 있다. 2000년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권위 특별절차의 설립은 비정부기구의 필수불가결한 공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옹호자들이 그들의 인권활동에 의해 회통당하고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인권전문가의 영향

인권위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우려사항을 지적하는데, 특정국가에 대한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한 매우 귀중한 분석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적절히 받지 못했던 사안들을 끌어올리기도 함. 한해 동안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묘사함. 전문가들의 업무는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인권분야에서 한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상당부분은 특정국가에서 정부나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권전문가의 인권침해와 실태, 결론, 권고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4. 협력 과제

○ 국내 NGO간 협력

먼저,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NGO들 사이에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접근방향, 해결과제의 우선순위, 공동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순수 인권뿐 아니라 관련국간 국가이익, 한반도의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측면들이 작용하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일련의 이슈이다. 금번 유엔 인권위에서 각국 인권결의안의 채택 혹은 부결에서 보듯이, 국제무대에서는 인권문제조차 자국의 이익이나 외교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권리정치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관련 NGO들이 시각, 접근방향, 우선순위, 프로그램 등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 정부와 역할 분담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정책을 수립할 때는 대북정책 기조 및 목표,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한반도 주변 상황, 국내외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의 특수한 국가이익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북한의 인권개선과 함께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촉진하거나 돕도록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유엔 인권위의 북한결의안에 대한 불참, 기권이 그런 입장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직접적으로 일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NGO의 역할분담론이 여기에서 제기된다.

NGO는 기본적으로 정부 및 시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감시 및 대안 제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조직, 재정, 활동 등에서 순수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인권 개선에 관심 있는 NGO들은 정부의 역할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설정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정부와 함께 NGO도 자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요컨대,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와 NGO간 역할분담은 상호 견제 및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국제 NGO와의 협력

또한 인권의 보편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그 반면에 북한인권 혹은 한반도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국제 NGO와의 협력도 하나의 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국제 인권NGO와의 협력은 (1)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NGO 차원의 평가를 공유하고, (2)북한인권 관련 정보에 객관성과 균형성을 마련하여, (2)관련국 혹은 유엔의 판단에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북한인권 평가가 국제NGO와의 공동 작업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5. 토론문에 대한 질문

- 1) ‘인권결의안 발의과정’에서, EU가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1차초안에는 프랑스의 특별보고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2차초안에는 포함되고 ‘유아살해’ 등 선정적인 용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한 원인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2)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에서, EU내에서 북한인권을 접근하는 입장이 강경과 온건으로 나누어져있고 올해 결의안 채택은 강경 입장이 우세한 결과로 보고 있는데, 강경과 온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각각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두 입장이 해당 시기 북한과 EU의 관계나 북한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인지요?

또 '결론'에서, 미국과 EU의 북한에 대한 인권정책을 정치적 압박과 '길들이기 외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인권위에서 NGO의 역할'에서, 두 NGO의 상이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NGO간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벗들의 활동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런 경험에서 얻은 교훈도 말씀해 주십시오.

4) '인권에 대한 북한정부의 노력'에서, 북한이 인권결의안 채택 이후 즉,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부분이 포함된 이후에는 대화의 창구가 달혀졌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특별보고관이 임명된 것에 북한이 미안마와 같은 전례를 밟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안마와 같은 전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신개입주의 정책과 북한관련 특별법안 문제제기 쿠바, 이라크, 이란 사례와의 비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II. 냉전이후 미국의 신개입주의 정책

1. 미국의 새로운 개입주의 정책

- (1) 개입주의의 적용 조건
- (2) 개입주의의 정책수단

2.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과 의회의 통제

- (1) 행정부의 개입주의 정책과 의회의 통제
- (2) 미국의 신개입주의 정책의 특징과 특별법

III.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과 쿠바, 이라크, 이란의 사례

1. 쿠바

- (1) 미국-쿠바 관계의 전개
- (2) 쿠바 자유민주연대법
- (3) 미국의 대 쿠바 정책 전망

2. 이라크

- (1) 미국-이라크 관계의 전개
- (2) 이라크해방법
- (3)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과 무력개입

3. 이란

- (1) 미국-이란 관계의 전개
- (2) 이란 민주주의법
- (3) 미국의 대 이란 정책 전망

IV. 미국의 대북 개입주의 정책과 특별법안

1. 미국-북한 관계의 전개와 대북 특별법안

- 2. 북한자유화법, 인권법 및 한반도 평화안보법
 - (1) 북한자유화법
 - (2) 북한인권법
 - (3) 한반도평화·안보법

3. 미국의 대북 개입주의 정책의 전망: 3가지 시나리오

- (1) 제1시나리오: 인권문제와 타협안의 분리
- (2) 제2시나리오: 인권과 반화산·반테러의 연계
- (3) 제3시나리오: 인권문제와 체제전환의 연계

V. 예상문제점 및 우리의 대응방향

1. 미국의 대북 개입주의 정책전망과 정책고려사항

- (1) 대북 개입주의 정책전망
- (2) 예상문제점

2. 우리의 대응방향

- (1) 미국이 대북 특별법이 탈북자 및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국한토록 설득
- (2) 경제적 권리와 강조하는 대북 유엔인권결의 수정안을 주도
- (3) 국내 보-핵 대결 방지 및 탈북자단체간의 경쟁 차단
- (4) 난민보호법 제정 및 통일부 외청으로 난민청 신설

I. 문제제기

개입주의(interventionism)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를 자국의 외교정책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¹⁾ 좁은 의미의 개입주의는 다른 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대한 군사개입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개입주의는 강대국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주로 강대국의 대외정책에서 자주 나타난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을 개입주의세력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자신들의 행위는 국익과 국제정의(미국) 또는 공산주의의 확산(소련)을 위해 취해진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였다.²⁾

냉전 이후 단일패권체제를 확립한 미국은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입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다.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정책과 국내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국에 대한 정책을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이 '불량국가'라고 이름붙인 수단, 리비아, 시리아,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등 7개국가 가운데 특히 이란, 이라크, 북한 3개국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고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의 정권붕괴를 지향하는 공세적인 개입주의 정책에 나섰다.

미국적 가치기준으로 볼 때,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국가이자 테러지원국인 '악의 축'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국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정책은 이들 국가들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입주의 정책의 흐름에 따라,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은 동북아지역에서 최대 긴장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위협의 제거라는 안보적 접근과 함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양대 축으로 삼고, 북한정권을 더욱 강하게 전방위 압박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냉전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신개입주의 정책에 관해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규명한다. 둘째, 미국의 신개입주의 정책이 어떻게 쿠바, 이라크, 이란 등 3개국에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미국 신개입주의 정책의 등장배경과 입법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전망해 본다. 끝으로, 미국의 대북 개입주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각 경우에서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본다.

II. 냉전이후 미국의 신개입주의 정책

1. 미국의 새로운 개입주의 정책

(1) 개입주의의 적용조건

미국의 대외전략은 외교적 고립주의(diplomatic isolationism)와 개입주의로 나누어볼

1 조지프 나이,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0, 220-1쪽. ※ 원저: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Inc., 2000).

2 Kenneth 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 p. 47.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개입주의는 개입주의적 예외주의(interventionist exceptionalism)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인 외교정책적 행동을 통하여나 때로는 군사력까지도 동원하는 것을 가리킨다.³⁾ 미국은 건국 이후 200회 이상 대외 군사개입을 시도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정권교체까지 도모한 것은 총 16차례이고 12차례가 미국의 단독군사행동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 미국이 단독 군사행동으로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차후에 친미성향의 지도자를 내세워 배후조종을 지속한 경우도 7차례나 되었다.⁴⁾

냉전시대에 나타났던 미국의 전통적 개입주의는 주로 반미적인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은 우간다의 이디 아민 정권,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남아프리카의 백인정권들과 같이 해당국가의 인권억압, 인종차별에 대해 개입주의정책을 취해왔다. 때로는 베트남 고딘디엠 정권의 교체나 파나마 침공과 같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개입주의 정책을 취한 경우도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은 새로운 조건에 따라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 안보전략을 재정립하면서 적대국가의 대내 체제보다는 국제분쟁과 갈등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내적 체제를 문제 삼는 대신에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리즘, 지역안보 위협 등 대외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대외요인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측면까지도 문제시하고 있다.⁵⁾ 2002년 9월에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⁶⁾은 대외 개입의 조건으로 '자유시장질서의 교란'이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리즘 지원'과 같은 외적 요인과 '비민주주의'나 '인권탄압'과 같은 내적 요인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외적 요인으로 미국은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의 교란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리즘 지원을 개입조건으로 들고 있다.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 질서의 유지는 미국이 줄곧 표방해 온 개입주의적 예외주의의 전통적인 형태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지원국가를 응징하기 위한 개입주의 정책은 냉전이후 표방해 온 것들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2002년 9.11테러사태 이후 분명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02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9.11사태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반테러를 명분으로 한 것이었고, 2003년 4월 이라크 침공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어났지만 대량살상무기의 해체를 명분으로 한 군사적 개입이었다. 현재 반테러 국제연대를 주장하며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 개입정책들도 이러한 명분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내적 요인으로 미국은 자국민 학대나 인권탄압의 두 가지를 개입의 조건으로 들 수 있다. 국제법상 무력사용은 자기방어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어느 나라이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인권문제와 관련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1945년 나치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재판 이후, 주권국

3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2nd edi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8), p. 165.

4 김태호, "미국의 이라크 개입외교: 도전요인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편 「주간국제문제분석」, 2003년 12월, 5쪽.

5 박종칠, "미국의 대불량국가 정책 전망과 파급영향", 국제문제조사연구소 편 「국제문제연구」 제3권 제2호(통권10호), 2003년 여름, 16~17쪽.

6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가의 관할권 내에서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고 있을 때 그 수권을 견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외국의 무력개입이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였다. 즉,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무력사용과 주권침해는 유엔헌장이나 기타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조항에서 예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⁷⁾

개입주의적 예외주의의 전통 속에서 미국은 종종 민주주의와 인권을 자국의 국제적 이익과 동일시해 왔다.⁸⁾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인권'문제가 주제가 된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1월 6일, F.D.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4가지 자유(언론·신앙의 자유, 결집·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1941년의 대서양헌장 및 1942년의 연합국 공동선언을 거쳐, 유엔헌장의 인권조항이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고부터 미국은 인권외교를 전개해 왔다. 그만큼 인권문제는 미국의 오랜 외교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냉전시기 인권문제는 소련파의 체제경쟁 속에서 오랜 동안 반공이데올로기애 종속되었으며, 1970년 중반에 와서야 미 의회와 카터 행정부에 의해 인권이 미국외교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⁹⁾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의 외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심화되어 오고 있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의 해제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였다가 막상 증거를 찾지 못하자 독재자의 제거, 민주주의의 증진, 인권보호 등을 새로운 짐승명문으로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나 '인권'이 초당파적으로 미국의 대외 개입정책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개입주의의 정책수단

개입주의 정책은 강제의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조셉 나이(Joseph Nye)는 강제의 정도를 연설, 방송, 경제적 원조 등 낮은 강제에서부터 군사자문, 봉쇄, 제한된 군사행동, 군사침공 등 높은 단계의 강제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¹⁰⁾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수단은 크게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셉 나이가 제시한 여덟 가지 정책수단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봉쇄조치'와 '반대단체의 조직·지원'의 경우는 사안별로 성격이 나뉜다. 봉쇄조치는 외교·경제관계의 단절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인지 군사적 봉쇄와 같은 적극적 형태인지에 따라 비군사적, 군사적 성격 여부가 판명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단체의 조직과 지원은 초기에는 인권단체에 대한 보호이나 반정부 민주단체의 지원과 같은 비군사적 조치도 있으나, 반체제단체의 육성이나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조치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개입주의의 정책수단은 다음 열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국내외적인

7) Richard Faik, "Human Rights", *Foreign Policy*, March/April 2004, pp. 18-26.

8) 억 도널리, 박정환 옮김, 「인권과 국제정치: 국제인권의 원칙과 기능성 및 한계」, 도서출판 오름, 2002, 165쪽. ■원 저: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2nd edi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8)

9) David P. Foske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91), pp. 121-7.

10) 조지프 나이,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글아카데미, 2000, 220-1쪽. ■원 저: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Inc., 2000).

반대여론 조성 등 낮은 단계의 강제수단에서부터 △반정부방송이나 △원조 또는 뇌물의 제공이나 부역반대, △경제적 봉쇄조치, △군사적 봉쇄조치, △인권단체의 지원, △반체제단체의 조직과 지원, △반체제단체에 대한 군사자문, △제한된 군사행동, △전면적인 군사침공 등으로 점차 개입의 수위가 높아진다.¹¹⁾ 이 열 가지 정책수단 가운데 앞의 네 항목과 '인권단체의 지원'은 비군사적인 개입조치들이며, 뒤로부터 세 항목과 '군사적 봉쇄조치'는 군사적인 개입조치들이며 '반체제단체의 조직과 지원'은 준군사적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 대통령의 경고연설이나 미 국무부나 의회의 관련국 조사보고서의 제출 또는 청문회의 개최 등은 국내외적인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반체제 방송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나 TV 송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 외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라디오의 공급을 들 수 있다. 개입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도적, 비인도적 원조나 뇌물이 사용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역거래의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 봉쇄조치이다. 봉쇄조치는 미국과의 거래는 물론 다른 국가들의 무역 거래까지도 제한을 받는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선박검색조치도 낮은 단계의 군사적 봉쇄조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나아가 체제전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강제조치(군사적 개입)를 취하기도 한다. 반정부·반체제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며, 이를 단체에게 군사자문이나 군사장비,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 제한된 군사행동을 펼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적인 군사침공을 단행하여 정권교체를 시도하기도 한다.

조셉 나이는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성권력(hard power)뿐만 아니라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연설권력(soft power)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리즘과 이슬람파괴파들에 대해서는 경성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와 동시에 박송이나 인쇄매체와 같은 연설권력의 사용하여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산시켜 자발적인 통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과 의회의 통제

(1) 행정부의 개입주의 정책과 의회의 통제

미국이 대외 개입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는 국제법(유엔안보리 결의 등)과 국내법(전쟁권한법, 대외 경제제재법 등)의 두 가지에 의거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은 국내법적으로 대외 개입주의 정책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행정부)측의 정책기조에 가장 큰 제동이 걸리고 의회-대통령 관계가 가장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무역정책 영역이다. 무역영역에서 미국 의원들이 여러 사회이익집단들의 입격에 따라 복잡한 손익계산에 입각해 행동하기 때문에 종종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하곤 하였다.

이에 비해 안보영역에서는 종종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이 나타나곤 하였

11) 이러한 10단계 분류는 Nye, 앞의 책, 221쪽의 내용(연설→방송→경제원조→군사자문→지원반대→봉쇄→제한된 군사행동→군사침공)을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새롭게 정한 것이다.

다. 안보영역에서 의회는 당론이나 행정부 요구에 따르거나 각자의 평소 성향을 담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제적 지위상황에 따라 대외개입 및 전쟁 참여를 겪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다.¹²⁾

이러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회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트루먼 대통령이 미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전을 결정한 이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헌법적 요건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통킹만 공격을 의회의 선전포고는 물론 승인도 없이 강행했으며, 리처드 M. 닉슨 대통령도 베트남전쟁 중 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전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전횡에 미 의회는 크게 반발하였다. 여기에는 1960년대 말 미국 내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던 반전운동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미 대통령에 의한 전쟁개시에 제동을 걸 것이 바로 「전쟁권한법」이다. 이 법은 미 의회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쟁 들입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적 장치이다. 이 법안의 본래 이름은 「의회와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관한 합동해결」(Joint Resolution Concerning the war powers of Congress and President)로서, 전쟁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소재와 개시 절차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¹³⁾

당시까지만 전쟁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이 법안이 미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만들어져 백악관으로 올라오자, 당시 닉슨 대통령은 "이 법은 지난 200년간 헌법 하에서 적절히 행사되어온 대통령의 권위를 간섭하려는 시도"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다시 미 의회에서 2/3이상 압도적 다수결로 찬성을 얻어 1973년 11월 7일 확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적대지역에서 군대를 투입하기 48시간 전에 상하원 의장에게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의 군사행동 통보는 하위 외교위원회와 상위 국제관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회의 유회 또는 3일 이상 정회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상하원 의장이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의회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의회가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거나 선전포고를 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다만, 조기철수가 미군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인정될 때 추가로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전쟁권한법」에다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금지 내용을 추가한 것이 1982년 12월 8일에 통과된 「볼랜드 수정법」(the Boland Amendment to the War Powers Act of 1973)이다. 이 수정법은 CIA가 의회 정보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수립된 니카라과 좌익 정권에 반대하는 사보타지를 주도하자, 이에 다수당이던 공화당이 격노하여 콘트라반군에 대한 자금지원을 삐감토록 법제정을 주도하여 성립된 것이다.¹⁴⁾

12) 일성호,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의회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2001, 191쪽.

13) 조성렬, "북한은 왜 불가침조약에 집착하는가", 『신동아』 2004년 2월호, 393~395쪽.

14) "The Boland Amendment to the War Powers Act of 1973", <http://www.nationmaster.com/encyclopedia/Boland-Amendment>
updated Feb. 16, 2004.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이 법이 단지 CIA의 불법활동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국가안보국(NSA)이 콘트라반군을 지원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리하여 국가안보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밀매로 얻어진 수백만 달러의 이익금을 당시 니카라과 좌익정부와 싸우던 우익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다.¹⁵⁾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볼랜드 수정법」 위반이었다.

여기에도對이란 무기밀매 및 콘트라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작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로버트 맥팔리언 보좌관 등도 개입된 것이 들어나 과문을 일으켜, 결국 1987년 이 사건은 미 의회의 직접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선출직 공무원인 의회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미국의 신개입주의 정책의 특징과 특별법

이러한 전통적인 행정부 주도의 개입주의 정책은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제체제의 붕괴로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신개입주의의 죽은 미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자 이를 견제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미 의회는 종전에 대통령에게 속해 있던 예산편성과 외교정책 등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입법활동을 전개하였다.¹⁶⁾

냉전 이후 나타난 개입주의적 대외정책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국가별 특별법을 통한 미 의회의 행정부 통제장치의 확보이다. 그 동안 미 행정부의 대외 개입주의 정책에 대해 의회는 회계연도별 「대외관계수권법」(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과 같은 일반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국가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들을 통합시킴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대외 개입주의 정책을 짚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냉전 이후 새로 나타난 미국의 신개입주의 정책이 가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의회가 대외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단속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콘트라반군 사건과 같은 불법자금 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 행정부는 의회의 통제를 받아 합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외 개입주의 정책을 전개한다.

둘째,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개입주의 정책은 국내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정책추진에 힘을 얻게 된다.

셋째,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해당정권이 물러나면 중단되기 쉬운 반면, 의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초당파적인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행정부의 교체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미국의 대외정책을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쿠바 민주주의법」(1992)이며, 이 법을 필두로 이를 보완한 「쿠바 자유·민주연대법」(1996)과 「쿠바 자유법」(2001)이 제정되었다. 그밖에도 「이라크 해방법」(1998), 「이란 민주주의법」(2003), 「시리아 책임법」(2003) 등이 제정되어

15) 『연합뉴스』 1996년 9월 21일.

16) 주미영, "미국 대통령직의 개혁과 향후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 2003, 223~225쪽.

미국의 대외 개입주의정책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2003년 10월 「북한 자유화법」이 미 상하원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의 대체입법 성격을 가진 「북한 인권법」(2004)이 미 하원에 제출되어 심의단계에 있다.

<표-1> 미국의 대 불량국가 인식과 제재법안

미국의 우려사항	미국의 조치	제재법안
쿠 바 ○ 테러지원국	○ 7대 '불량국가'	쿠바민주주의법(1992) 쿠바자유·민주연대법(1996) 쿠바연대법(2001)
이라크 ○ 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및 미사일개발, 핵개발시도 ○ 테러지원국 ○ 인권탄압	○ 후세인정권 무력전복 ○ 7대 '불량국가'+ 3대 '악의 죽'국가	이라크해방법(1998)
이란 ○ 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및 미사일개발(최근 핵개발우려) ○ 테러지원국 ○ 인권탄압	○ 봉쇄정책 ○ 7대 '불량국가'+ 3대 '악의 죽'국가	이란민주주의법(2003)
북 한 ○ 대량살상무기(핵, 화학무기) 및 미사일개발 ○ 테러지원국 ○ 인권탄압	○ 봉쇄정책 및 매파적 포용정책 ○ 7대 '불량국가'+ 3대 '악의 죽'국가	북한자유화법(2003) 북한인권법(2004) 한반도평화안보법(2004)

III. 미국의 신개입주의 정책과 쿠바, 이라크, 이란 사례

1. 쿠 바

(1) 미국-쿠바 관계의 전개

1959년 1월의 쿠바혁명으로 쿠바-미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1961년 1월에는 양국이 국교를 단절하였으며,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위기'사태 이후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쿠바정부는 미국계 정유회사가 소련산 석유정제 명령을 거부하자 이를 몰수하였고, 자국내 미국인 자산 및 외국인기업의 전면 국유화하고 1961년 1월 미국과 국교를 단절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소련식 기업혁신과 농지개혁을 시행하면서 점차 사회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그 해 5월 카스트로의 '사회주의선언'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정부는 쿠바설탕의 수입할당 삭감조치를 취하였다가 나중에는 전면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이후 쿠바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를 취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비록 쿠바가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로 불리고 있고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등재되어 있으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 쿠바는 2001년까지 국제반테러 관련 12개 조약에 모두 가입하였지만, 국제 테러단체의 요원들의 피난처를 제공하여 미국의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의 대 쿠바 제재조치는 1992년 「쿠바민주주의법」의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¹⁷⁾ 이 법안은 쿠바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봉쇄하고 3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6년 2월 24일 쿠바공군이 영공을 침범한 미국 인권단체 비행기 2대를 격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 의회는 이 법안은 쿠바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고 경제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대 쿠바 제재법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3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 헬름스 의원(공화당)과 버튼 의원(민주당)의 공동발의로 「쿠바 자유·민주연대법」을 제정하였다.¹⁸⁾

(2) 쿠바 자유·민주연대 법

공동발의자의 이름을 따 「헬름스-버튼법」으로 불리는 「쿠바 자유·민주연대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내걸고 있다. 첫째, 쿠바 내 카스트로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추구하며, 둘째 쿠바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며, 셋째 쿠바에 민주성을 정부를 이끌 과도정부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넷째 카스트로 정권에게 몰수된 미국국적자의 재산을 불법매매로부터 보호하는 것 등이다.

이 법안은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국제제재의 강화(제1편), 쿠바의 자유·독립의 지원(제2편), 미국 국적자의 재산권 보호(제3편), 미국 국적자의 재산을 몰수했거나 그 몰수재산을 불법매매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거부(제4편) 등 4개편으로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1편(국제제재의 강화)에서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직접투자금지, 쿠바의 국제금융기관 회원자격 취득반대, 미주기구(OAS) 참가 반대, 구소연방 국가들의 쿠바원조 반대, 대 쿠바 TV방송, 외국과 쿠바와의 상업거래·원조 감시, 민주·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특정 쿠바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쿠바 핵발전소의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보류, 쿠바에 대한 여행과 가족송금 금지해제, 쿠바법률의 추방, 미국 항공기에 대한 쿠바의 공격 유죄평결 등이다.

제2편(쿠바의 자유·독립의 지원)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수립, 쿠바주민에 대한 원조, 경제제재의 해제조건, 과도정부의 요건, 민주적 선출 정부의 요건, 쿠바 내 대표적인 미국인 몰수재산의 예시 등이다.

제3편(미국 국적자의 재산권 보호)에서는 미국 국적자의 몰수재산에 대한 불법매매 금지, 몰수재산의 소유권 증명, 외국인 이의조정위원회의 확인절차 배제, 행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편에서는 미국국적자 재산의 몰수 또는 몰수재산의 불법매매에 관여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거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피델 카스트로로 집권이후 쿠바정부에 재산이 압류된 쿠바출신 망명자 등 미국적자들의 압류재산을 쿠바정부로부터 구입한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에서 미국인들은 카스트로가 국유화하거나 매각해버린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조치로 외국기업들을 고소할 수 있고 쿠바와 거래중인 非미국기업들의 중역들 및 친지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이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쿠바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3) 미국의 대 쿠바 개입전망

18) The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of 1996: Helms-Burton Act(Libertad); 임인수, 1997, 「1996년 쿠바자유민주연대법: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of 1996」 「국제법률경영」(국제법률경영연구원) 여름호, 64-111쪽.

17) Cuban Democracy Act of 1992.

「쿠바 자유·민주연대법」 제3편(Title 3)은 쿠바정부가 몰수한 미국시민의 자산을 매매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러시아·멕시코·캐나다 등은 이 조항에 대해 쿠바와 자국기업의 거래를 방해하는 내정간섭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EU는 미국의 대 쿠바 제재강화법안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EU의 경제·상업관계를 결정하고 제한하는 일방적인 입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미 국무부에 공식 항의하였다. 러시아도 이 법안은 국제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외국과 관계유지를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 법안이 자국기업의 대 쿠바 투자를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1994년 이래 미국-캐나다-멕시코를 연계시키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반발이 이어지자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서 쿠바와 거래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조항의 발효를 여러 차례 유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⁹⁾ 전임 클린턴 대통령은 8차례나 이 법안 제3편의 시행을 유예하였으며, 2001년에 출범한 부시 대통령도 2001년 7월과 2002년 1월 두 차례 시행유예를 의회 상원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 제3편의 폐기에는 반대하고 있다.²⁰⁾

한편, 1992년 이후 유엔총회에서 대 쿠바 금수조치 해제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쿠바 자유·민주연대법」이 제정된 이후 1996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쿠바와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을 준수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암도적 표차로 채택해 오고 있다.²¹⁾ 미국도 국제적인 여론에 밀려 「쿠바 자유·민주연대법」에도 불구하고 점차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1998년 교황의 쿠바 방문 이후 미국은 직항비행의 허용, 현금송금의 허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사업적 거래절차의 간소화 등 부분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쿠바 정부와 국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여, 여행규제와 현금송금 제한 등 쿠바정부에 대한 경제제재는 유지하고 있으나, 종교단체와 민간단체의 대쿠바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쿠바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미국과 쿠바간 직접 우편서비스 재개,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 민주인사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 쿠바민주화와 관련된 조치는 강화해 오고 있다.²²⁾

2. 이라크

(1) 미국-이라크 관계의 전개

19 U.S. Department of State, "Fact Sheet: Title III of the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Washington File*, 17 January 2002. (<http://usinfo.state.gov/regional/ar/us-cuba/burtonfact17.htm>)

20 U.S. Department of State, "Bush Informs Congress of Need to Renew Helms-Burton Title III Suspension", *Washington File*, 17 January 2002. (<http://usinfo.state.gov/regional/ar/us-cuba/burton17.htm>)

21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대쿠바 제재해제 유엔결의안에 기권하다가 지난 1999년부터 찬성으로 돌아섰다.

22 Mark P. Sullivan, *Cuba: Issues for the 108th Congress, Report for Congress*, April 16, 200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걸프전 아래, 후세인 정권이 이라크 내 대량 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UN 무기사찰단(UNSCOM) 활동을 방해하면서 이라크와 미국·영국은 지속적으로 갈등해 왔다. 또한 미국·영국과 이라크 사이에 비행금지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걸프전쟁 이후 미국은 6차례 이상 CIA를 중심으로 후세인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공작을 전개했다가 이라크인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투옥되는 등 실패를 되풀이하였다. 이에 맞서 이라크정부도 1993년 조시 부시 전 대통령의 쿠웨이트 방문시 암살을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양국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1997년 11월 이라크가 UNSCOM 가운데 미국인을 추방하면서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98년 8월 이라크가 UNSCOM의 사찰을 전면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대이라크 제재가 착수되었다.

미국은 한편으로 후세인정권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이라크 반체제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10월 31일 「이라크해방법」을 제정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엔 무기사찰단이 바그다드에서 철수한 직후인 1998년 12월 16~19일 미·영 연합군은 "사막의 여우 작전"(Operation Desert Fox)이라는 이름 아래 이라크 내 주요 군사시설 및 대량살상무기 제조시설에 대한 대규모 이라크 폭격을 단행하였다.

(2) 이라크 특별법²³⁾

「이라크해방법」은 전문(前文)에서 제정목적을 이라크의 민주주의 체제전환(transition)으로 밝히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 민주적 정부의 출현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간략한 전문과 △약칭, △제정배경, △제정목적, △지원방법, △반대파의 조직, △전병재판소의 설치, △정권교체, △기타 등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라크해방법」 제4조는 이라크의 민주적 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반체제단체에게 라디오·TV방송을 이라크 내로 송출할 수 있도록 1999회계연도에 미국 정보처(USIA)가 원조총액 20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과 병참지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반체제단체에 대해 군사교육 및 훈련을 위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9,7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예산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에서 주목할 것은 제5조 "이라크 반체제 민주조직의 편성"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 대통령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이 법안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단체의 자격기준은 후세인 정권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며 민주적 가치(인권 존중,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 협력의 유지, 야당과의 협력의사)를 갖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3) 미국의 대 이라크 무력개입

「이라크해방법」에 따라 1998년 12월 30일부터 프라하를 거점으로 하는 이라크 반정부방송 '라디오 자유유럽'이 송출을 시작하였다. 또한 1999년 1월 20일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따라 군사지원을 받게 될 이라크민족의회(INC)와 쿠르드애국연합(PUK), 쿠르드민주당(KDP), 이슬람혁명최고평화의회(SCIR), 이라크민족화합, 입헌군주제운동 등 7

23 Iraq Liberation Act of 1998.

개 이라크 반정부조직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 10월 이라크민족회의 요원들을 위해 500만 달러 상당의 방위장비들과 미 국방부에 의한 군사훈련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라크인 150여명은 텍사스와 로드아일랜드 등에서 의학 및 컴퓨터, 홍보 등의 훈련을 받았다.²⁴⁾

뒤이어 미 국무부는 2000년 9월 29일 이라크의 재야단체들을 대표하는 이라크민족회의(INC)에 인도적 활동과 홍보 및 기타 활동비로 4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금은 이라크 반체제단체 지원금으로 배정된 800만 달러 중 첫 지급분으로, 라디오와 TV방송, 주간신문 및 인터넷 웹사이트의 확충 등에 사용되었으며 인도적 구제활동의 준비와 INC의 관리구조 개선에도 들어갔다.²⁵⁾

2002년 10월 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관한 지시」를 통해, 군사훈련비로 국방부 예산에서 9,20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전에 대비하여, 해외에 망명중인 이라크 반체제 反후세인 세력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기본전투훈련과 척후병·판측병·통역병·현병 등을 양성하는 방안이 포함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미군의 훈련 대상이 될 반체제단체에는 클린턴 대통령 때 발표되었던 반체제단체들이 주축이 되었다.

후세인 정권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새로운 유엔무기사찰단(UNMOVIC)의 사찰활동을 거부하자 미국은 이라크를 무력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미 특수부대의 지원 하에 이라크의 반체제세력이 주축이 되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작전의 효율을 고려하여 미국, 영국, 스페인 연합군의 대규모 공격을 통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2002년 11월 13일 이라크가 조건 없는 사찰을 요구하는 「유엔결의안 1441호」(2002.11.8.)을 수용하였지만, 미국은 이라크의 신고사항과 미 정보기관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라크가 유엔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3월 19일 미국과 영국, 스페인 3국 군대는 '이라크의 자유'(Iraqi Freedom)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에 돌입하였다.²⁶⁾

마침내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전쟁승리를 선언함으로써 후세인 정권은 전복되었다. 「이라크해방법」의 지원으로 육성된 반체제세력들은 비록 직접 이라크공격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재건되는 신생 이라크 군대와 경찰의 근간을 이루었다.

3. 이란

(1) 미국-이란 관계의 전개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1979년 1월 반팔레비 혁명 이후 이슬람공화국 탄생과 테헤란주재 미국대사관 인질사건 발생 등으로 악화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5년과 1996년에 이란에 대해 무역 및 에너지투자를 제한하는 경제조치를 강화하였지만, 1997년 이란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식량·의료품 수출과 이란의 카펫·캐비어

의 대미 수출을 허가하였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무기 및 관련기술의 이전이나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대이란 투자 등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²⁷⁾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월 취임 직후 이슬람 신정국가 형태의 이란 정부가 핵무기개발을 추진하면서 反이스라엘 테러조직을 지원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정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라크전 종료 후 시리아를 집요하게 압박하던 미국은 이제 이란으로 공격목표를 돌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인권탄압, 테러단체 지원, 해개발 의혹의 3가지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첫째,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종교지도자 하메네이(Khamenei)가 무한권력을 행사하는 회교공화정을 채택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반체제세력뿐만 아니라 개혁파에 대해서도 고문, 무단처형, 언론검열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이란이 알-카에다 배후세력을 비호하고 있으며, 이라크 시아파에 영향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 레바논의 해즈볼라 게릴라들을 지원해 대 이스라엘 공격을 자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2002년도에 해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등에게 자금, 군사훈련, 무기 등을 제공하였다.

셋째, 미국은 이란의 테러 배후지원 의혹과 함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중부도시 나탄즈에 건설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²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최근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사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02년 11월 테헤란대학 등 이란 각지 대학에서 발생한 대학생들의 민주화 개혁시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이란 개입정책 쪽으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반정부 세력을 통한 간접지원에 머물면서 이란 정권의 내부 붕괴를 희망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란정부의 민주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샘 브라운백 의원(美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의 발의로 「이란민주주의법」(2003.5.19.)을 입법화하였다.

(2) 이란 민주주의법

「이란민주주의법」은 제정목적으로 △ 투명하고 완전한 민주주의의 달성을, △ 국제감시 하에 국민투표의 실시, △ 자유로운 국민생활의 고취, △ 언론자유의 실현 등 네 가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²⁹⁾

이란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고취하고 국제기구 감시 하에 민주적 국민투표를 촉구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라디오 파르다'(Radio Farda)의 확대·개편에 역점을 두면서 다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투표를 지지하거나 이란정부에 반대하는 이란계 미국인, 이란망명자 및 미국부 중동우호구상(MEPI), 교육·문화사업국(ECA)과 의논한 뒤 반정부방송인 '라디오 파르

27 박종철, 앞의 글, 42쪽.

28 William J. Broad, David E. Sanger, "Surprise Word on Nuclear Gains by North Korea and Iran",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03.

29 Iran Democracy Act.

24 김정아, "이라크 -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공격", 「국제지역정보」 제6권11호(통권 112호) 2002. 11. 1.

25 「연합뉴스」 2000년 10월 24일

26 김종완, 앞의 글, 21~25쪽.

다'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이란국민을 위해 페르시아어로 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하며, 민주주의·법치·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서적이나 영상물, 기록 등을 번역하여 이란국내로 배포한다.

셋째, MEPI와 ECA는 민주적 국민투표의 증진 프로그램과 활동을 목적으로 이란 내로 라디오·TV를 송출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제공한다.

(3) 미국의 대 이란 개입전망

2003년 5월 13일 미국정부는 「이란민주주의법」(2003.5.19.)의 제정에 앞서, 자국의對이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이상 준비해 온 페르시아어 홈페이지를 공개하였다. 이 페르시아어 홈페이지는 이란국민을 겨냥한 것으로, 「이란민주주의법」에 따라 본격적인 반정부 심리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³⁰⁾

2003년 11월 7일, 부시 대통령은 전국민주주의재단(NED)에서 행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동국가들의 민주화 개혁을 촉구하면서 '중동지역 자유를 위한 진전된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란국민의 민주화요구에 유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합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란정부에게 경고하고 있다.³¹⁾

<표-2> 미국의 불량국가 대책 법안 비교

	куба 자유·민주연대법	이라크해방법	이란민주주의법
제정목적	국제공조에 의한 쿠바 자유화 (democratic solidarity & liberty)	이라크의 정권교체 (liberation)	이란의 민주화 (democracy)
입법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지원국 (테러범에 피난처 제공) ○ 인권탄압 (미국인 재산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화학무기 개발 및 핵개발 시도) ○ 테러지원국(반イス라엘 테러단체 지원) ○ 인권탄압(신경통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및 핵개발 우려) ○ 테러지원국(반イス라엘 테러단체 지원) ○ 인권탄압(신경통치)
파급영향	국제사회의 반발로 '국제 공조'는 무산된 채 미국단독의 경제제재 지속	국제공조 없이 미국단독으로 경권교체 추진	반이란 국제여론 조성
주요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인의 쿠바내 자산 소송권 인정 ○ 외국기업의 쿠바진출 제한 	반정부 방송 및 반정부 조직 결성 및 훈련	반정부 방송, 출판물 배포
문제점	외국기업의 활동까지 미국 국내법으로 제약	지원단체의 일방적 선정으로 이라크국민의 합의 도출에 실패	반이슬람 성향 노정(이슬람통치=반민주주의 규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에서 반대결의안 다수결로 채택 ○ 법은 존속하나 일부조항 실시 유예 	UN안보리의 무력제재 결의 없이 일방적인 무력 침공으로 후세인 정권의 타도	이란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지 않고 IAEA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사태추이 관찰

미국이 비록 공개적으로는 이란의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관심은 미화 8억 달러가 투입되는 러시아제 핵발전소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란정부는 핵발전소를 건설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편으로는 이란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넘어가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는 IAEA 결의안을 채택(2003.11.26)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IAEA의 핵사찰을 반기로 하고 하였다.³²⁾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자들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직접 지지하고 나서면서 미국은 이미 이란의 민주화시위에 상당 부분 개입해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이란 제재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며, 「이란민주주의법」을 제정해 놓으면서 이란 민주화를 위한 국제여론을 조성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재로선 미국이 이란을 군사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 간 현안들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악화될 경우 미국이 궁극적으로 무력수단에 의지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란은 미국의 신보수주의 강경파들이 이슬람 신정체제의 붕괴를 시도하며 국내 학생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공박하며 미국에 대해 즉각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양국이 무력충돌을 벌일 가능

30 「연합뉴스」 2003년 5월 13일

31 「연합뉴스」 2003년 11월 7일.

32 「연합뉴스」 2003년 11월 27일.

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IV. 미국의 대북 개입주의정책과 특별법안

1. 미국-북한 관계의 전개와 대북 특별법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신개입주의 정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깊은 불신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2002년 1월 부시 미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더불어 세계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이어 2003년 1월 연두교서에서도 '무법정권'(outlaw regime)이라고 불렀다.³³⁾ 북한이 이와 같이 불리게 된 것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테러지원, 인권탄압과 독재체제 때문이다.

1990년대 초 핵개발 의혹으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로 미국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로 북핵문제가 일단 표면에서 사라졌지만,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문제가 들출하면서 1994년 제네바합의가 사실상 깨지고 북핵문제가 새로운 북미관계의 변수로 등장하였다. 그밖에도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하였지만 국회 비준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 국무부는 1979년부터 테러국가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과의 교역이나 외교관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발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1988년부터 계속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은 단 한번도 국제테러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아직 테러 관련 12개 국제협약과 의정서 가운데 6개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테러행위 근절 노력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또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2004년도 세계테러보고서에는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명기되었다.³⁴⁾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의 발생 이후 북한에서는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초반에 본격화되어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은 물론, 여타 모든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열악하게 만들었다. 북한사회는 비단 기아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지원체계가 모두 붕괴되었다.³⁵⁾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책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며 자유가 결여되어 있고, 주민들이

33 President George W. Bush, *The President'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President George W. Bush, *State of the Union*, January 28, 2003.

34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3, April 2004, pp. 85-93.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31912.pdf>)

굶어죽어가는 데도 많은 돈을 들여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비인도적 독재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책적 개입수단을 둘러싸고 미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한 그룹은 김정일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북한을 압박하는 강성권력의 사용을 선호하는 강경파이고, 다른 한 그룹은 연성권력을 동원한 실용적인 개입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온건파이다.³⁶⁾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NSC), 미 국무성 확산방지 담당자들을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은 북한과의 협상에 반대하고 핵 및 여타 군사문제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나아가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 국무부의 외교관과 지역전문가 및 의회가 주축이 된 온건파들은 대북 강압조치를 취하기 전에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북한정권의 붕괴전략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의 시도는 자칫 북한을 핵수출 위협국이 되도록 하거나 전쟁발발 또는 핵무기 통제의 상실과 같은 더 나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대신 대북 개입의 명분으로 탈북난민에 대한 지원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개선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2002년 10월 16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당)은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2002 북한난민구호법」(the North Korean Refugee Relief Act of 2002)을 제출하였다.³⁷⁾ 「2003회계년도 대외관계 수권법」(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 2003)³⁸⁾의 부속법안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법안은 그동안 탈북자들이 한국국민으로 간주되어 미국 내에서 난민자격으로 정착하는 데 겪어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³⁹⁾ 이 법안은 한국정부의 반발을 우려한 미 국무부의 반대에 부딪쳐 임법화되지 못했다가, 2003년 6월 25일 브라운백 의원이 재상정함으로써 7월 9일 수정안 형태로 미 상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법화되었다.⁴⁰⁾

2003년 1월 13일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북한이나 한반도개발기구(Korean Peninsula Development Organization)에 대한 원조를 금지할 목적으로 킬(Kyl) 의원이 「2003 북한민주주의법」(North Korea Democracy Act of 2003)을 외교위원회에 상정하기도 했으나 검토과정에서 폐기되었다.⁴¹⁾ 이와 별도로 「북한자유화법」이 미의회에

35 (사) 좋은 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2004년 2월, 23~24쪽.

36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June 9, 2003; Peter Hayes, "Bush's Bipolar Disorder and the Looming Failure of Mult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Arms Control Today*, October 2003, pp. 3~6.

37 "Brownback Introduces Bill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October 17, 2002. (<http://brownback.senate.gov>)

38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 2003"(PL 107-228) Sept. 30, 2002. (http://www.fas.org/asmp/resources/govern/107th_hr1646pl.pdf)

39 이 법안의 발의에는 국제구호협회(th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미국난민협회(the U. S. Committee on Refugees),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미국이민·난민봉사협회(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s of America), 인권법률협회(Lawyers Committee on Human Rights) 등 미국 내 NGO들이 동참하였다. 브라운백 상원 의원의 홈페이지, "Brownback Introduces Bill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October 17, 2002. (<http://brownback.senate.gov/record.cfm?id=187792>)

40 「연합뉴스」 2003년 7월 16일 미국 인권법을가협회(Layers Committee on Human Rights)의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first.org/intl_refugees/regions/asia/north_korea/n_korea.htm)

상정되었다. 이 법이 상정될 수 있던 적법계기는 2003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27개의 종교, 인권단체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의 결성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 상원과 하원은 2003년 11월 20일과 22일에 각각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였다.⁴²⁾

자유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용을 보다 중립적으로 수정한 대체법안인 「북한인권법」이 2004년 3월에 미 하원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밖에도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평화·안보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2. 북한자유화법, 북한인권법 및 한반도 평화·안보법

(1) 북한자유화법

2003년 7월 우여곡절 끝에 「북한난민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안은 북한난민의 미국 내 입국절차 간소화하는 단일한 목적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북한 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2003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다. 자유화법은 그 취지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국제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량 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 △UN현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³⁾

첫째,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조치'로는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탈북자에 관한 국무성의 비밀보고서, 북한의 교도소와 강제수용소, 중국체류 탈북자상황에 대한 유엔의 보고서, 북한의 종교박해 상황에 관한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정보청문회 개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식량제공에 관한 미 국제개발처(USAID)의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해 상원안은 2003~06년간, 하원안은 2004~07년간 각각 4년간 매년 1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승인하고 있다.

둘째, '탈북난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우선난민지위 인정정책의 실시, 미국인의 북한아동 입양, 인도적 임시입국허가, 북한주민의 신분변경, 임시보호지위, 특별우선순위비자(S비자)와 신분변경, 국토안보부 내에 대량살상무기정보센터의 설립, 탈북자에 대한 노동허가권의 부여, '특별우선순위 제2그룹' 난민지위의 부여, UN 난민고등판무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인권기구를 위한 기금조성, 국내 난민자격의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북 라디오방송(Voice of

41 http://www.humanrightsfirst.org/intl_refugees/leahy_let101802.pdf

42 「2003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 발의자 Brownback, Baydn 상원의원,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 Freedom Act) 발의자 Royce, Smith, Faleomavaega 하원의원.

43 상원법안은 총 4개 문야에서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법안은 여기에 '기타사항' 2개 조항을 포함해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America, Radio Free Asia)을 1일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북한주민에게 라디오를 공급하기 위해 매년 100만 달러(하원안 2004~08년, 상원안, 2003~06년)를 책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정치체제 변화를 위해 마련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불법행위방지구상(IAI)에 참가할 것을 권장하고, 개인·단체·외국정부기관에게 북한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최대 2년간 총 50만 달러(상원안은 100만 달러)를 제공하며,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단체를 위해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이 2003년부터 4년간 매년 50만 달러(하원안)~100만 달러(상원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대북협상 관련부문'으로는 미·북 협상시 반드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이전의 종식, 핵무기개발 중지,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해체, 정치적 자유·강제 수용소·종교의 자유 등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시켜야 하며,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정부가 아닌 북한주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 북한자유화법」이 제공하기로 한 자금규모는 북한인권의 촉진과 인도적 지원 및 청문회 개최(4억 달러), 탈북난민 지원과 난민촌건설의 지원(1억 달러), 북한 내로의 라디오 반입(4,400만 달러),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인권 관련 NGO에 대한 지원(800만 달러), 북한 내의 민주주의 실현(400만 달러) 등 2003~06년까지 총 5억 1,800 달러(하원안)~5억 6,200만 달러(상원안)이다.

(2)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북한에서 인권과 자유가 신장되도록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을 △북한 내 기본인권의 보호와 증진, △탈북난민문제의 인도적인 해법 모색,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의 강화,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유동, △민주적인 체제로의 한반도 평화통일의 진전 등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

이 법안은 본문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에 관한 5개 조항, 제2장은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와 관련한 3개 조항, 제3장은 '탈북난민의 보호조치'의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로서 북한 및 다른 동북아국가와의 협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관심사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내 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의 증진을 위해 민간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해 2005~08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를 지원하며,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늘리고 단파라디오를 북한에 반입하기 위해 2005부터 4년간 매년 2백만 달러를 책정하였으며, 유엔인권위원회를 활용하여 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둘째,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로, 미국의 인도적 원조에 관한 보고서 작성, 투명성·모니터링·접근성 확보의 조건 아래 매년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산가족상봉과 일본인 남치문제의 해결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을 금지하고, 북한의 난민, 고아,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탈북난민의 보호조치'로는 북한난민과 망명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탈북난민에 대한 미국 당국심사 신청자격의 부여하며, 탈북난민을 미국이 특별한 인도적 관심

을 갖는 우선순위 2그룹으로 지정하고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위임 없이도 미국 난민지위 신청을 가능토록 하며,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피난처" 정책을 국제협정으로 추진하고, UNHCR을 통해 중국정부와 협상을 벌여 중국체류 북한인의 지원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보호조치로서 북한망명자에 대해 인도적 임시입국을 허가하고, 미국정부와 협력했고 최소 1년간 미국에 거주한 북한인 임시입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며, 미국은 북한의 주변국들도 역시 인도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미국 내 탈북난민 신청인들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자금규모는 대북 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 증진프로그램(200만 달러×4개년)과 단파라디오 공급(200만 달러×4개년), 북한의 난민, 고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2000만 달러×4개년) 및 인도적 지원금(매년 1억 달러) 등이다. 여기서 4개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 지원금액은 4억 9,600만 달러로서, 「북한자유화법」에서 규정한 자금규모를 약간 밀도는 금액이다.

(3) 한반도 평화·안보법

최근 미국 민주당의 일부의원들은 대북 강경파의원들이 상정한 「북한자유화법」은 물론 「북한인권법」도 대북지원 규제, 탈북자 수용조항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북핵 6자회담의 협상노력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대체법안으로 「한반도 평화·안보법」(Act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도 △북한 내 인권·민주주의의 증진, △대북 식량·인도적 원조의 제공, △탈북자의 구워 및 보호, △북한 경제개혁의 착려 등 한반도 평화적착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6자회담과 함께 미·북 양자대화를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당사국들간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제거·감소를 합의할 경우,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동결 및 핵물질의 안전보관과 핵무기 해체를 이행하기 위해 5,00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로는 북한 내 법치·인권·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무부 내에 '북한인권담당특사'를 설치하여 북한 내 수용소 및 탈북자 실태 등 인권침해사례의 조사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전략을 검토하고 UN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내에 외부정보가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아시아라디오', '미국의 소리' 방송을 1일 최고 24시간까지 확대하고 이를 청취할 수 있는 단파라디오를 북한에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으로서, 국제기구와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해 대북 식량·의료·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 탈북을 유도하여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정치·경

제적 암박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또한 중국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고 UN의 탈북자 지원을 위해 '이주·난민 원조' 예산 및 '긴급 이주·난민 원조기금'을 대북 원조 제한규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의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한편, 한·일·러 3국에게도 탈북자 임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난민지위를 부여토록 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대북 경제개혁 지원'방안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영리단체·인도적 지원단체 등에게 2005~06년 2년간 2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경우 미국이 대북 무역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경제지원을 단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은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보상을 미 의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 평화·안보법」에서 규정한 자금규모는 총 2억 775만 달러로서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일 3국내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2005~06년간 매년 100만 달러씩 총 200만 달러를 지원하며, 북한 내 정보유입을 목적으로 한 대북 라디오방송 및 라디오 보급용으로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75만 달러씩 총 375만 달러, 대북 식량·의료 인도적 지원을 위해 2005~06년 2년간 1억 달러씩 도합 2억 달러,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영리기구·인도적 지원단체 등에게 2005~06년 2년간 100만 달러씩 도합 200만 달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미국의 대북 개입주의 정책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현재 미 의회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북한관련 특별법과 또 하나의 법안발의가 추진 중이다. 「북한자유화법」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안보법」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 법안 중심이 아니라 성립 가능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대북 특별법안의 입법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

(1) 제1시나리오: 인권문제와 타협안의 분리

현재 미국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자유화법」에 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집권당(공화당) 미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 소위원장은 3월 23일 공화·민주 양당의 협의를 거쳐 「2004 북한인권법」을 하원에 상정하였다.⁴⁴⁾ 「2004 북한인권법」은 지난 3월 31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7월 6일 하원 법사위의 심의종료를 앞두고 있다.

새로이 미 하원에 상정된 「2004 북한인권법」은 이미 제출된 「북한자유화법」 초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보다 중립적인 내용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점에서 북한자유화법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법안의 명칭이 「북한자유화법」에 비해 중립적인 표현인 「북한인권법」으로 변경됐으며, 둘째로 북한이 완전한 경제개혁을 이루기 전까지는 대북무역제재 해제와 경제원조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셋째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항을 삭제

〈표-3〉 북한자유화법과 북한인권법, 한반도평화·안보법의 비교

북한주민	북한거주 주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비인도적 지원 (단, 이산가족상봉, 일본인 납치해결이 전제) ○ '민주주의'증진을 빼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만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식량 및 인도적 원조 제공(단, 정치적, 경제적 압박 배제) ○ 북한거주 주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개선
대북방송 (1일)	3시간→24시간	3시간→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24시간 ○ 단파라디오 보급
탈북자 문재	입국절차 복잡 (우선난민지위 인정 정책, 특별우선순위 비자와 신분변경 등)	탈북자 수용조항 유지 단, '우선피난처' 규정을 신설하여 간소화	중국내 탈북자의 강제 복송을 막고 UN의 탈북자 지원을 위해 원조 예산과 기금을 대북 원조 재한규정에 상관없이 사용하도록 조치
대북협상의 조건	대북협상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태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책 방안, 인권문제가 핵심의제로 포함	대북협상시 인권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완화되었으며,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입장으로 정리	없음
타현안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안보 부 내 WMD정보센터 설치 및 미국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PSI참여를 권장 ○ 한반도통일 지원 	없음	핵동결, 핵물질의 안전 보관 및 해체체 이행을 위해 5,000만 달러 재정지원
무역제재의 해제와 경제원조	북한이 완전한 경제개혁을 이루기 전까지는 무역제제 해제와 경제원조 금지	단서조항 삭제	북핵해결시 무역제제 해제와 경제원조 명시

제되었고, 넷째로 북한난민의 입국문제를 현실화시켰다. 그밖에도 대북 방송시간을 1일 3시간 방송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려던 계획에서 12시간으로 축소하였다.

인권법안은 종교의 자유, 북한난민에 대한 구호 및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등 인권문제를 의제로 하고 있고, 또한 인권문제와 타현안을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미국내 종교단체들이 광범위하게 후원하고 있다. 또한 주요정책수단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단체 지원·육성을 제시함으로써 내정간섭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의회의 통과가능성을 높였다. 유엔 대북 인권결의가 나온터라 국제적인 동의를 얻기도 쉬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인권법안은 미국 의회 내에서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타협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허바드 대사의 후임으로 오는 8월에 부임할 예정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 내정자

44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 James Leach, "House Panel Passe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March 31, 2004. (www.usinfo.state.gov)

(현 주 폴란드 대사)는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인권문제를 매개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⁴⁵⁾ 따라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북한인권문제와 민주화문제, 그리고 북한체제의 존속 및 전반적인 한반도의 장래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 제2시나리오: 인권문제와 반학산·반태리의 연계

「북한자유화법」은 한편에서는 북한난민의 지원과 인권개선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인권을 내세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지 원국가에 대한 응징과 나아가 북한의 민주화나 김정일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자유화법」의 제정에 적극적인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정부가 정책을 대전환하지 않는 한 절박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만일 이것이 더 많은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1989년 동북체제의 와해로 이어진 동북주민들의 탈출처럼 김정일 정권의 와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⁴⁶⁾

이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주요 정책수단을 보아도 이것은 분명하다. 이 법안은 반학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며, 이를 근거로 북한 인근해역에서 PSI훈련 실시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 대북 인권결의가 나왔고, 유엔 반학산 결의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현행 국제법의 태두리 내에서 제한적인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4월 28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여야의원 및 비정부기구(NGO)관계자와 한국의 종교·인권단체 회원들이 모여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북한 자유의 날'(North Korea Freedom Day)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이튿날인 4월 29일 「북한자유화법」이 미 상원에서 심의에 착수하는 때를 맞춰 거행된 것이다.⁴⁷⁾ 이 자리에서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북한자유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였다.⁴⁸⁾ 따라서 「북한인권법」을 내용을 보완하여 「북한자유화법」을 제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가 「북한자유화법」을 폐기하고 「북한인권법」으로 대체할지, 아니면 두 법을 모두 통과시킬지는 북핵 문제의 사태전개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3) 제3시나리오: 인권문제와 체제전환의 결합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반미적인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을 통해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강경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군사적 개입정책을 추진해 온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이라크와 달리 외교적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해 왔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초기에 해결의

45) 『중앙일보』 2004년 4월 24일

46) Richard G. Lugar, "A Korean Catastrophe", *The Washington Post*, July 17, 2003.

47) 『동아일보』 2004년 4월 29일, 『연합뉴스』 2004년 4월 29일.

48) "Brownback Speaks at North Korea Freedom Day", April 28, 2004. (<http://brownback.senate.gov/record.cfm?id=220932>)